# Ⅱ. 사림세력의 등장

- 1. 사림세력의 성장기반
- 2.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 3. 사림세력 구성의 특징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1. 사람세력의 성장기반

士林은 士類와 같은 의미로 통시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먼저 '士'의 용례를 우리 나라 문헌에서 찾아보면 士族, 士流 또는 士大夫 등의 용어는 고려후기부터 나타난다. 이들은 무신집권으로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지방의 鄕吏子弟가 과거를 통해 대거 등장하면서 能文能吏의 학자적 관료로 대두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우, 唐末五代에 걸쳐 귀족사회가 무너지고 지방의 지식인이新儒學에 훈도되어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대부계급으로 등장하던 추세와 대략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門閥과 祖蔭보다는 개인의 후천적 자질이 존중되고 학문적・행정적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士'의 신분이 등장하기마련이었다.1)

《고려사》에 의하면 士人・士流 또는 사족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사인・사류는 고려시대의 出仕路 가운데 武와 吏 출신을 제외하고 文科출신의 登科者를 지칭하였다. 무반은 무예 등 실기가 위주이고 吏가 문음과 향리로서의入仕路인데 반하여, 士는 문학 즉 지식인이란 뜻이다. 사족은 향리・서리의吏族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 같으며 대체로 고려 중기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신분, 仕宦을 할 수 있는 가문을 의미하였다.

한편 사대부란 용어도 거의 같은 시기인 14세기부터 자주 나온다. 사대부는 과거의 문신·무신과 유형을 달리하는 지배계급이었다. '讀書曰土, 從政為大夫'라고 한 바와 같이 '학자적 관료'이며 '관료적 학자'인 이 신흥계급은 고려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조선의 건

<sup>1)</sup>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국에 주동적 사명을 담당했던 것이다.2) 세종대에는 중국의 예에 따라 4품이상을 大夫라 하고 5품 이하를 士로 호칭하였다. 사대부란 말은 사족과 함께 여말선초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현직관료와 관료후보자까지 포함한 지배계급이란 뜻으로 쓰였던 것이며 조선 후기의 양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대부계급은 왕조교체기와 세조의 집권을 전후하여 집권세력과 재야세력으로 분화되었다. 재야세력으로 밀려났던 鄭夢周→吉再의 학통을 계승한 이른바 金宗直일파가 15세기 후반에 중앙정계에 크게 진출하면서 사림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들은 주자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던 신진사류로서 처음에는 橫南지방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영남사림파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자신들을 직접 사림파라고 부르지는 않았다.3)

대체로 사람이란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던 시기는 己卯士禍를 전후한 중종대였다. 사람파는 성종대의 김종직일파를 비롯하여 4대 사화 때 피해측의 신진사류를 지칭하였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지배하에 신흥사대부가 성장하였듯이 15세기의 사람파는 勳舊派의 집권하에 성장하였다. 15세기의 사람파는 길재→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영남지방의 재지사류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어 갔다. 그 계보는 여말의 왕조교체기에 '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켜 재야세력으로 밀려났던 私學派와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불의로 간주하였던 낙향 및 신진사류가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사림파라 하더라도 전일의 훈구가문에서 사림파로 전향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5세기의 사림파가문이 16세기에는 훈구파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그 구성은 시기에 따라 상이하였다.

그런데 15세기의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재지사림파는 그 형성배경과 출신

<sup>2)</sup> 李佑成, 〈高麗朝의「吏」에 대하여〉(《歷史學報》 23, 1964).

<sup>3)</sup> 사림의 개념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李樹健, 앞의 책, 18~22쪽.

李秉烋、《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一潮閣, 1984), 5~10쪽.

李泰鎮,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上·下)〉(《震檀學報》34·35, 1972·1973).

E.W. Wagner, 〈李朝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全北史學》4, 1980).

기반 및 학문적 경향과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먼저 그들의 가계를 추적해 보면 훈구파에 비해 郡縣吏族에서 사족화하는 시기가 늦었다. 사대부가 고려 후기에 대두했다면 사림파의 가문은 주로 여말선초에 성장하였다. 이들은 대개 군현이족에서 科擧・添設職・散職 등을 통해 사족화하였고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文才를 발판으로 출세하였다. 그들은 중소지주로서 생활기반이 향촌사회에 두어졌고 비록 한때 上京從仕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處土的 취향을 가졌으며, 따라서 농촌의 실정과민중의 애환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관직보다는 학문을 더 중시하였고 그들의 宦歷도 대개 侍從・文翰・敎授之任과 養親을 위한 수령직을 역임하였다. 그들은 중앙정계에 투신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권력구조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림파에는 國婚을 하는 예가 거의 없었고 또 역대 공신계열에 참여한 자도 별로 없었다.

15세기 사림파는 經術과 문장을 다같이 중시한 점에서는 훈구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詩賦詞章에 능한 동시에 《小學》과 《家禮》를 교육과 行身의 기초로 삼아 孝悌를 몸소 실천하고 婚喪祭禮를 《朱子家禮》대로 실행하려하였다.

#### 1) 사림의 경제적 기반

사림의 경제적 기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여말선초의 향촌사회의 변화는 고려 후기 이래 정치·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군현제와 지방통치체제의 개편과 정비에 따른 鄕·所·部曲의 소멸과 任內의 直村化,5) 토지의 사적지배권의 발달에 따른 재지사족의 광범한 존재, 儒佛교체에 따른 재지세력의 불교적인 시설과 기반의 인수, 北虜・南倭와 기타 전란・기근으로 인한 流移 民의 대량 발생 및 새 선진농법의 수용에 따른 재지사족들에 의한 임내 또는 외곽지대에 대한 활발한 지역개발이란 사실 등을 들 수 있다.6)

<sup>4)</sup> 李樹健, 위의 책, 22쪽.

<sup>5)</sup> 李樹健,《朝鮮時代 地方行政史》(民音社, 1989).

고려 전기 이래 광범하게 존속했던 屬縣과 향·소·부곡 등은 후기 이래 승격과 소속의 변동, 혁파 등으로 인해 점차 소멸의 길을 걸었다. 그 시기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고려 후기부터 여말까지, 제2기는 15세 기 전반, 제3기는 임란을 전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에는 무신집 권, 원의 지배, 북로·남왜 등 내외정세의 격변으로 外官의 증설과 향·소· 부곡의 소멸현상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權臣 · 入朝宦寺들의 청탁으로 임내 가 무질서하게 승격되기도 하였다. 특히 몽고의 침입과 왜구의 창궐은 임내 의 土姓吏民의 대규모 이동을 유발시켜 조선 초기 군현제 정비를 보다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제2기에 오면 조선왕조의 중앙집권 적 지방제도가 확립되면서 당시까지 잔존했던 속현과 향·소·부곡이 정리 되고 여말에 무질서하게 승격된 임내가 새로이 정비되어 갔다. 즉 영세한 主 縣을 다시 속현으로 환원시키고, 수개의 小縣을 병합, 하나의 주현을 만드는 작업이 15세기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잔존했던 속현은 임란을 전후하여 직촌화하면서 面里制로 개편되었다. 향·소·부곡의 직촌화과정은 속현보다는 그 시기가 훨씬 앞서서 진행되었고 15세기 후반까지 잔존했던 향·소·부곡도 16세기에 와서는 모두 직촌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각종 임내의 소멸은 이제까지 그 곳을 장악ㆍ지배했던 土姓吏民을 流散시키고 그 들의 향촌지배기반을 박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은 임내의 경우 토착이족(鄕東·長東)에 의해 邑治의 중심에 위치한 邑司를 발판으로 발동되었던 것이며 향촌사회의 지배권도 읍 치지역을 장악한 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新增東國興地勝覽》의 각 군현 古跡條에 실린 廢縣 및 향·소·부곡 등의 소재지를 현지 답사해 보면실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군현과 각종 임내를 막론하고 그 구역의 유래가 강인하게 후대까지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고을의 邑格高下와 주읍·속현 및 향·소·부곡의 구분은 그 위치가 당시 농업생산성의 우열, 농경지의 廣狹과 대체로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즉 大邑의읍치보다 다소 협소한 곳에 중소군현의 읍치가 있으며 그보다 더 열악한 곳

<sup>6)</sup> 李樹健,〈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 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9, 韓國精神文 化研究院, 1987).

에 향·소·部曲司가 있었다. 따라서 읍격의 고하는 동시에 그 곳을 본관으로 한 土姓勢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바로 본관의 우열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며 각기 토성들의 上京從仕나 사족화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고려초 이래 지방관청의 소재지인 동시에 그 고을 토성이민의 집거지였던 읍치지역은 15세기 이전에 이미 그 나름대로 개발되어 있었다. 주읍의 읍치는 임내의 그 곳과 외곽지역에 비해 비교적 넓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유하였고 그 위치가 대개 하천의 중·하류유역에 해당하여 토질이 비옥하였다. 더욱이 당시의 보편적인 농법인 休閑法과 直播法하에서는 16세기 이래 移秧을 전제한 水稻作 재배 적지인 산간·계곡지대에 비해 농경이 편리하고 수확량도 많이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읍치지역은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의 직할 감독하에 있어 量田과 徵稅체제가 임내나 벽지·오지의 외곽지대에 비해 철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곳 토지는 각종 職役田을 비롯한 公田과 土豪的 위치에 있던 토성이민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역말선초 이래 신흥사족이 새 농장을 설치하거나 새 터전을 마련할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수령의 직할통치하에 있고 또 토성이민의 장악하에 있던 읍치지역은 역말 이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官民의 노력이 경주된 결과 오지·벽지에 위치한 속현이나향·소·부곡 등 임내지역보다는 개발이 훨씬 앞섰던 것이다.

대체로 고려 후기까지 토착향리·장리들의 장악하에서 미개발된 상태로 있었던 임내지역은 고려 후반 이래 조선 초기에 걸쳐 기성사족의 낙향과 재지사족의 확산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갔다. 한편으로 인구의 증가와 개간, 새 농법의 수용과 移秧法의 보급은 각 주읍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오지·벽지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이러한 지역은 이앙을 전제한 수도작재배지로서 또는 漁鹽(해안)과 임산지 및 別業·書院 설치의 적지로서 列邑의 재지세력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

한편 신흥사족들은 새로운 선진농법을 수용하면서 지역개발에 주력하였다.7)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사대부층은 대농민시책과

<sup>7)</sup> 李泰鎭, 〈14, 5세기 農業技術의 발달과 新興士族〉(《東洋學》8, 1978).

<sup>-----, 〈16</sup>세기의 川防(洑)灌漑의 발달-士林勢力 대두의 經濟的 背景 一端->

대향촌시책에 있어서도 朱子의 사상과 시책을 모범으로 하려고 하였다. 신왕조를 개창한 사대부들은 주자의 이상을 실제 정치에 적용하여 과전법을 제정 실시하고 적극적인 권농책과 향촌안정책을 추진해 갔다. 세종을 비롯한역대 군주들의 勸農策과《農事直說》의 반포,姜希孟의《衿陽雜錄》,申洬의《農家集成》등에서는 주자의 勸農文에서 제시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깃들여 있었다. 15세기에 와서 농서의 편찬,농법의 개량 및 농경지의 확대정책은 주로 영남출신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이들은 이앙을 전제한 '苗種法'과 川防(狀) 축조를 적극 건의하였다. 8) 15세기초 이앙법은 주로경상도와 그 인접지역인 강원도 일부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었으나,임란 때의 日錄인《瑣尾錄》에 의하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도 直播하여 苗가 난 뒤 묘가 성글면 총밀하게 자라고 있는 곳에서 拔秧하여 그 묘를성근 곳에 이식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후 17세기초에는 이 시기 선진농법을 대변하는 柳袗의《渭濱明農記》에서 '還種秧法'・'秧糞法'・'養軟法'・'養乾秧法'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이앙과 관계되는 새 농법을 채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앙법을 비롯한 선진농법은 여말 이래 신흥사족 및 재지사족의 노력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川防灌漑法과 人糞·家畜糞의 활용, 퇴 비제조와 같은 施肥法도 이앙법의 보급과 궤를 같이 하면서 발달해 갔다. 특 히 이앙법은 관개수리를 전제한 농법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수리시설의 확충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종래의 堤堰에 대신하여 천방(보)의 축조가 16세기 이래 재지사족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었다. 제언은 천방에 비해 工役이 훨씬 많이 들고 규모가 적어 조그만 한재에도 쉽게 고갈되었으 므로 수전에 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줄 수 없었다. 이에 이앙법의 보급과 함 께 사림파에 의한 천방축조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신흥사족 또는 재지사족들에 의한 南中國의 선진농법과 농서 · 목

<sup>(《</sup>韓沽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金容燮,《朝鮮後期農業史研究》(一潮閣, 1977).

李樹健, 위의 글, 29~57쪽.

<sup>8)</sup> 李樹健, 위의 글. 이하 서술은 이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면의 전래 및 우리의 독자적인 새 농서편찬과 농법개발 등은 그들로 하여금 재지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치·사회적 세력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선진농법을 활용하여 향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세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지사족들은 강의 상류와 중류유역 및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지류와 산간 계곡을 따라 卜居하거나 농장을 개설하였다. 이렇게 개설된 농장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선진농법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데다가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이용하여 관개할 수 있어 한해가 적었고 또 河床이 낮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수해가 적었다. 또한 재지사족들은 대개 중소지주였으므로 비록 평원 광야지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농지획득의욕을 충족시키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한편 이러한 곳은 대개 避兵·避世하는 데는 유리한 자연지세를 갖추었고<sup>9)</sup> 한재와 수해를 동시에 최소로 줄여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닦고 유한한 정경을 선호하는 사림파의 성향에 맞았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곳은 대개 背山臨水하여 각종 농산물과 땔감 및 부식용의 淡水魚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외관상 이러한 거주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관청과의 거리가 멀다는 데서 취락의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중세사회하에 있던 재지사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면이 장점이 되기도 하였다. 안팎으로 노비가 있어 항상 시중을 들고 또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관청과 격리되어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번잡한 시정의 분위기와 관권의 감시 및 관리의 침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지주였던 재지사족의 田民(토지와 노비)은, 대지주였던 在京勳戚·관료의 토지와 노비가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通婚圈 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사족의 재산은 크게 노비와 토지·가옥 및 기타 가재도구로 구분되며 재산상에 있어서 토지와 노비의 비중은 시대에 따라 한결같지 않았다.

<sup>9)</sup> 李重煥,《擇里志》八道總論, 慶尚道 및 卜居總論, 山水 참조.

사족의 재산 증식방법으로는 첫째 父‧母‧妻邊에서 전래되는, 즉 상속과분배 및 기타 친척으로부터 수증하는 경우, 둘째 卜居와 개간에 의한 새 가옥과 전답의 확보, 셋째 이러한 자산의 기반 위에서 매득하거나 증식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祖業계승과 자녀균분상속제하의 혼인에서 증식되는 것으로, 이는 家勢와 명망 또는 貴婚과 富婚에서 가산이 축적되는 경우이며 名門들의 복거나 지역개발의 경우는 둘째에 해당된다. 그들은 父祖傳來의 세거지를 떠나 자신이 새 터전을 잡거나 처향‧외향을 따라가서 이주하였는데 그러한 곳은 대개 피병‧피세에 적합하며 배산임수하여 山水勝景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내외조상의 배경과 현지 外官의 관권비호하에 無主地‧陳荒地를 수령으로부터 立案을 받거나 影占하기도 하며 개간가능지를 찾아서 새 전답을 확보하기도 하고 廢寺의 토지와 노비를 冒占하기도 하였다. 첫째와 둘째에서 축적된 재력으로 다시 長利나 商行爲를 통하여 토지와노비를 계속 증식시켜 나갔던 것이다.

특히 당시 양반들의 노비를 통한 상행위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는 농업과 현물을 위주로 한 봉건경제하에 있어 상업유통은 침체하고 자본축적이 빈약함으로써 産地와 소비지에 따라 상품의 가격에 격차가 심했다. 따라서 일정한 자산을 가진 사족들은 幹奴들에게 상술과 갖가지 利殖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상행위를 시켜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했다. 계절에 따른곡물과 布木 가격의 등락을 고려, 作米 또는 作木하여 그 차액을 얻는다든지, 곡물과 魚鹽을 교환하는 행위, 과실·소채·약재 기타 생활용구 등을 지방 場市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吳希文‧趙靖‧鄭維翰‧李聃命 등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담명일기에 의하면, 이 가문은 내륙(石田)에 거주하면서 하도나 동해안 쪽에 솔거노비를 보내 어염을 구입하여 수로·육로를 통해 운반해 와서 등점·우마차에 싣고 내륙 각지의 장시 등을 통해 米·米牟·稷·小豆·포목·과실 등과 교역하였다. 특히 質鹽은 당시 웬만한 가문이면 모두 소규모로 행하고 있었다. 기호학파의 成渾도〈答安邦俊書〉에서 海陸産物의 조달과 質販, 농업생산성과 風氣를 고려하여 卜居地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각종 分財記와 토지·노비관계 明文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조선 전기

는 토지보다는 노비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노비는 당시 사족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에 있어서나 재산의 생산성·수익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10) 그래서 훈구파나 사림파 또는 재조·재야세력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비를 갖고 있었다. 성종 때 永膺大君의 노비수는 "만 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11)고 하였고 洪吉汶·柳漢 등의 노비도 천여 ㅁ나 되었던 것이며, 승려 惠敬은 자기 노비를 龜巖寺에 시납했는데 그 노비도 번식하여 수천 구에 달했다고 하였다.12) 李孟賢(성종 때 부제학) 부처의 노비는 700여 구에 달하였고 柳義孫(세종 때 예조관서) 남매가 나눠 가진 그 부모의 노비도 381구나 되었다.13) 일반적으로 재지사족들의 가문에서도노비가 보통 수백 명은 넘었다.

在京權貴들의 노비는 토지와 함께 거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비하여 재지사족들의 노비와 토지는 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부근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14) 노비의 증식방법도 토지와 비슷하게 자신의 공훈과 관직을 매개로 하여 획득하기도 하고 부변·모변·처변 등에서 分衿·和會·別給형식으로 전래된 것도 있으며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노비는 노비 신분 내지 소유의 世傳法에 의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 가 하면, 소유노비의 奴妻婢夫라는 良賤交婚에 의해서 더욱 증식되어 갔다. 흉년·기근·전란 등으로 인한 救恤노비도 노비획득의 한 방편이었다.15)

私家의 노비 상속은 토지와 함께 자녀균분을 원칙으로 하였다.16) 국왕의 입장에서는 사족전체의 보호와 권익을 위하여 조상 전래의 토지와 노비가 자녀에게 균분되도록 종용하였는데, 그것은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듯이 富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왕권의 안정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sup>10)</sup> 이러한 현상은 15,6세기 財産文書上에서도 확인된다.

<sup>11) 《</sup>成宗實錄》권 251, 성종 22년 3월 계묘.

<sup>12) 《</sup>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6월 갑신 및 권 13, 태종 7년 2월 경자. 《文宗實錄》권 12, 문종 2년 2월 병진.

<sup>13)</sup> 李樹健 編著,《慶北地方 古文書集成》(嶺南大 出版部, 1981), 266 · 273 · 281 즉.

<sup>14)</sup> 金容晚,〈朝鮮時代 在地士族의 財産所有形態(1)〉(《大丘史學》27, 1985) 참조.

<sup>15)</sup> 李樹健, 앞의 책(1981).

<sup>16)</sup> 土族들의 토지・노비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金容晚, 〈朝鮮時代 均分相續 制에 關한 一研究〉(《大丘史學》23, 1983) 참조.

지배세력을 대표한 사족 전체의 지지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사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녀균분상속제가 무엇보다 요망되었던 것이다. 家産의 상속규정에 있어서 조·부모가 자손에게, 외조부모가 외손에게, 처부모가 처에게 許與 또는 別給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혈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즉 '孫外與他'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관념을 견지하였다. 財主는 조상의 유산이 대대로 혈족자녀에게 世傳되기를 바랐고, 법제적인 면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조업을 계승할 자녀 및 내외손 가운데 혈손이 없을 경우에는 使孫(4촌까지)에 傳係되었고, 출가녀가 자녀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전조치가 없는 한 그녀가 가져온 재산은 친정으로 환속되었다.17) 한편 토지·가옥·노비 등 조상의 유산을 放賣하는 행위를 불효로 간주하였는가 하면 부득이 매각할 경우에는 내외자손 사이에 매매 또는 교환하기를 바랐다.

재주가 자녀에게 노비와 토지를 分咎할 때는 대체로 분할주의를 지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령 여러 자녀에게 각처에 산재한 노비와 토지를 거주 지역별이나 노비호 단위, 소재지 전답별로 배정하지 않고 각처 소재의 토지와 노비를 세분하여 자녀 수대로 분할・분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민분급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잡하고 불편한 것 같지만, 재주의 입장에서는 조상의 유산이 자손 이외의 사람에게 전계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기자녀가 공동 연대의식을 갖고 관리한다는 데서 위험부담을 그만큼 감소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노비주의 입장에서 노비의 족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동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 신분계층으로서 노비의 자기보호 역할을 사전에 봉쇄하여 도망과 같은 그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운동 등을 약화시키는 데 의도가 있었다.18)

사족의 노비지배체제가 확고했던 조선 전기에는 노비가 토지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훨씬 높았다. 따라서 노비는 사족의 수족으로서 또는 중요한 재산으로서 그것의 多寡가 家運의 성쇠에 직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족의 禮俗과 체통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노비노동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였다. 使

<sup>17)《</sup>經國大典》 권 5, 刑典 公賤.

<sup>18)</sup> 李樹健, 앞의 글.

喚・居家・處郷・농경・길쌈・상행위 등 그 어느 경우도 노비 없이는 사족 으로서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 에 집권세력과 재야사림이 일반 政論에 있어서는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노비문제에 한해서는 양자의 이해가 거의 일치하였다.

노비 수의 증감은 대체로 왕권과 집권력의 강약에 비례하였다. 15세기 전반기의 국가적 良多賤少策에 의하여 줄어들었다가 그후 훈구세력의 비대와 재지사족의 성장에 따라 15세기말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당시의 전체 인구가운데 노비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19) 家內奴婢는 上典內外의 분신과같은 존재로 가내사역과 잡역은 물론 幹奴・庫直 등으로 행세하기도 하였고, 외거노비는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묘지기로서 墓山을 수호하고 墓位土를 경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자식 노비의 재산은 그 소유주에 귀속되었고(記上), 노비가 개간한 토지는 동시에 그 소유주의 것이 되기도 하였다. 20)

재지사족의 전답은 재경훈척세력과는 달리 공신전과 賜牌地는 별로 없고 衿得·매득 및 개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경훈척가문의 토지 는 노비와 함께 그 분포지역이 광역화했다면 재지사족의 전답은 財主의 거 주지를 중심으로 한 통혼권 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재경권귀 와 재지사족 사이에는 그들의 토지·노비소유체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선초 이래 훈구세력들은 관직과 권력을 이용, 토지·노비 를 축적한데다가 기존 토지와 노비의 유지에도 항상 집권세력과 관권의 협 조가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재경관인들과 京在所와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 었다. 사족소유의 토지·노비가 父邊・母邊・祖母邊・曾祖母邊・妻邊 및 본 관・출신지・任官地 등으로 전래 또는 획득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재소도, 재 경관인들의 토지·노비 소재지와 같이 연고지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제 가 바로 재경관인들이 서울 및 근기지방에 살면서 전국에 산재하다시피한

<sup>19)</sup> 成俔은《慵齋叢話》에서 "我國人物 奴婢居半"이라 한 바 있다. 광해군 원년 (1609)도 蔚山府戶籍臺帳에서 인구통계가 가능한 6개 面의 것을 정리해 보면 良人 이상이 51.4%, 賤人이 48.6%로서 公賤이 12.9%, 私賤이 35.7%였다.

<sup>20)</sup> 上典과 奴婢의 생생한 主奴관계는 吳希文(《鎖尾錄》)과 趙靖(《壬亂日記》), 李聃 命, 鄭維翰 등의 일기를 통해 노비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존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토지와 노비를 관장하여 효과적인 收租・收賣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경 관인들은 인맥·학맥·혈연·지연 또는 동료적 결합에서 각기 소유 토지·노비의 소재지 수령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권의 협조와 경재소 및 유향소와 연결된 상태하에서 도망노비의 추쇄와 外地의 토지·노비에 대한 수조·수공체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세가 몰락하거나 실세 또는 낙향하게 되면 기존 토지·노비의 소유체제가 붕괴되고 그 노비는 그름을 타서 상전을 바꿔 비호를 받거나 도망가서 신분향상을 꾀했던 것이다. 16세기 이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왜란과 호란을 겪은 17세기부터는 사족의 토지·노비소유와 그 지배체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이 있었다. 즉사족의 경제적 비중이 노비에서 토지로 옮겨왔고, 재지사족의 확대로 종래의 不在地主가 재지지주로 전환되었으며, 종래의 노비노동에 대신하여 노비의 佃戶・雇工化 내지 양민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재소는 마침내 광해군 4년(1612)에 완전 혁과되었다.21)

사족의 토지·노비 소유체제는 이 양자가 항상 유기적인 관련하에 賜與· 기증되거나 분금·매매·교환되었다. 일정한 토지에 그 관리인과 경작인이 반드시 붙어다니듯이, 고려 이래 공신전과 사패지 지급에는 꼭 노비가 함께 지급되었다. 이처럼 私家의 재산 분금에도 반드시 일정량의 토지와 함께 노 비가 분급되었다. 각종 분재기상에는 노비의 이름과 전답, 경작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데 양자를 비교해 보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전답매매명문의 분석에서 밝혀지듯이 사족들은 조상으로부터 전계받은 유산을 어떤 필요가 있어 방매할 때는 '孫外與他'하거나 '손외방매'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매매가 주로 분재자의 혈통을 이은 내외 친척간에 이루어졌다. 물론 예외가 많았지만 조선 전기의 사족가문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 그런데 17세기부터는 내외양변의 재산을 분급받은 당사자또는 그 당사자의 자녀나 내·외손 사이에서 전답의 상환행위가 많아졌다. 상환의 이유가 바로 '먼 곳에 경작이 불가능', '거주지 부근 전답을 대신 구매'라는 경우처럼 종전의 부재지주에서 점차 재지지주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

<sup>21) 《</sup>光海君日記》 권 49, 광해군 4년 정월 기미 및 권 58, 광해군 4년 10월 경인.

었다. 사족간의 토지매매행위는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보다는 각자 편의대로 거주지 중심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것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재지사족의 재산증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있으나 17세기 이전에 비해 토지·노비의 분포범위가 그만큼 축소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족의 외지전답은 대개 幹奴나 佃戶에 의해 관리되고 경작되었으니 집약적인 영농과 효과적인 수조체제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면을시정한 보다 효율적인 토지경영책이 바로 외지전답을 거주지 중심으로 집적하는 데서 성취될 수 있었다.

사족의 토지집적에는 무엇보다 양천민의 것을 매입 또는 겸병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인의 경우는 대개 還上(환자)·장리상환, 병역수행상, 부채상환, 기근 또는 艱難 등의 이유로 자기 전답을 부근에 사는 사족에게 방매하였다. 더구나 凶荒과 기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당시에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던 사족의 입장에서는 적은 재화로써 많은 토지를 매득할 수 있었다. 천인의 경우도 양인과 마찬가지로 飢寒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부채나 身貢의 독촉에 못이겨 전답을 방매하거나 상납(記上)했던 것이다.

재지사족들은 여말선초에는 閑良으로 존재하면서 과전법하에서 外方軍田을 수급할 수 있었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田地와 노비를 갖고 거기에다 매득·개간·겸병 등의 수단을 통하여 중소지주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한편 중앙정계에서 낙향하는 재경관인들도 당시 가족제도와 자녀 균분상속제에 의하여 각기 외향과 처향으로 가서 안착할 수 있었다. 또 재지 사족들은 유불교체기에 편승하여 廢寺의 토지와 노비를 影占하기도 하였고, 소유노비로 하여금 황무지를 개간하여 전지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개간가 능지는 노동력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외거노비를 시켜 경작케 함과 동시에 일정한 노비신공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15세기 대표적인 몇몇 사림파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22)</sup>

① 金宗直家門: 이 가문은 善山의 土姓吏族에서 여말에 비로소 사족으로

<sup>22)</sup> 李樹健, 앞의 책(1979), 184~195쪽 참조.

성장하였고 따라서 그의 父子代 이전에는 관직과 혼인으로 재산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父 金叔滋는 密陽의 토성사족으로 일찍이 상경종사한 차 弘信의 女壻가 되면서 선산에서 밀양의 처가로 이주하였고, 장인이 죽자 그의 田宅奴婢를 아내가 상속하게 되었다. 또한 김숙자는 大小科를 거쳐 내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소수나마 토지와 노비를 확보해 나갔다. 김종직은 밀양외가에서 생장하였고 출사 후에는 선산과 밀양을 왕래하였으며 결혼 후에는 처가를 따라 金山에 농장을 두었다. 그의 아들 緄도 처가의 재산을 분금받아 開寧에 전택을 마련하였다. 그외 이 가문은 당시 사족이 그러하듯 매득ㆍ수증 또는 卜居란 수단을 통해 家財를 증식할 수 있었다. 김종직가문의 고문서 분석에 의하면<sup>23)</sup> 16세기 중반 전체 재산은 노비 100여 구, 전답 수백 두락지정도로 나타나며 이후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들 재산의 분포지는 16세기말까지 전답은 처가ㆍ외가 등 2~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노비 또한 이와유사하였다.

- ② 鄭汝昌家門: 정여창은 河東縣吏의 7세손이며, 그의 증조 鄭之義 때 본관지 하동에서 咸陽으로 처음 이주하였다. 증조모는 寶城宣氏로, 그 가문은 여말에 사족화하면서 본관지를 떠나 상경종사하였으며 그 일부는 함양에 이주하였다. 이 가문은 15세기 훈벌가로 성장하였는데 정여창의 증조가 하동에서 함양으로 옮긴 것도 처향을 따라온 것이다. 이 가문의 경제적 기반은 선조전래의 전택·노비에다 증조모·조모 및 모변의 재산이 첨가되었다. 또한그의 처가 定宗의 子인 桃平君 李末生의 女였으니 京中 재산 중에는 처변의재산이 또한 많았다. 그의 증조모가 훈벌가에서 왔고 父가 순절한 대가로 국가적인 포상을 받았고 또 그가 종실의 사위가 되었으니 누대에 걸쳐 내외변으로부터 전래된 토지와 노비가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一門의 노비가 '幾百口'였다고 할 정도로 부호가였던 것이다.
- ③ 金宏弼家門: 김굉필의 先世는 본래 瑞興土姓으로 고려 후기에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증조 金士坤이 처향을 따라 玄風에 이주하면서 드디어현풍인이 되었다. 그의 조부 金小亨은 개국공신 趙胖의 사위였으니 처변으로

<sup>23)</sup> 金容晚, 〈佔畢齋 金宗直家門 研究〉(《嶠南史學》1, 嶺南大, 1985).

부터 분금된 재산이 많았다. 서울 貞陵洞私第는 바로 父祖 이래 전래해온 京 中田宅이다.

성종 3년(1472)에 그는 陝川郡 冶爐縣의 順天朴氏의 사위가 되면서 처가를 따라 야로현에 이주하였다. 그의 가문은 누대에 걸쳐 명문사족과 혼인하였으니 부조 이래 현달하지 않아도 경제적 기반은 공고했다. 김굉필의 전택·노비도 그의 연고지에 산재하였다. 그는 경중의 정릉동과 好賢坊에 주택이 있었고 세거지 현풍을 위시해서 야로(처가)·星州 伽川(처외가)·城南·迷原 등지에 토지와 노비가 있었다.

④ 金馹孫家門: 그의 先世는 본관 金海에서 향리를 세습하다가 6대조 金管代에 와서 비로소 사족으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고조대에 淸道人이 되었다. 조부는 한성부윤 李暕의 女壻였으며, 父는 龍仁士族 李宋順(工曹典書)의 曾孫女壻가 되어 처가를 따라 용인에 우거하기도 하였다.

이 가문의 전택·노비도 청도(부가)·김해(본관)·용인(외가)·木川(처가) 및 경중 등지에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당시 자녀균분상속제하에서의 혼인관계에 의한 결과였다. 이 가문은 당시 재지사족들과 마찬가지로 농장뿐만 아니라 精舍와 樓亭 같은 건물도 여러 곳에 건축하였는데, 이는 당시 그들의 경제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2) 사림의 사회적 기반

사림파 형성의 사회적 배경을 구명하는 데는 먼저 각 읍 土姓의 존재실태와 土姓吏族의 사족화과정 및 사족과 이족의 분화, 재지사족의 혼인 등 재지사족의 존재양상이 밝혀져야 한다. 나말여초에 걸쳐 형성되었던 각 읍의 토성은 바로 후삼국시대 그 지방을 대표하던 재지세력으로, 그 군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호족은 왕건과의 연결과정에서 왕건의 麾下將相이 되거나 새로 姓을 하사받기도 하고 혹은 본관지를 떠나 상경종사하면서 귀족과 관인이 되었고 재지토착의 토성은 상급향리층을 구성하여 군현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토성의 분화는 고려초부터 재경관인과 재지세력으로 나누어졌다.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 군현과의 사이에 事審官制와 其人制를 이용

하여 재지세력을 조종하였다. 기성세력인 재경관인들은 고려왕조의 진전과 끊임없는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세력교체가 빈번하여 지배세력의 신진대사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신진세력을 공급해 주는 자원은 다름 아닌 지방군 현을 지배하고 있던 재지토성이었다. 군현토성이 상경종사하여 귀족과 관인이 되었지만 이들은 동시에 계층분화를 계속하고 있었다.<sup>24)</sup>

지방은 이미 고려 이전부터 州·郡·縣과 村 또는 鄉·部曲 등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그 구획마다 각기 토성이민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지역적인 구획과 토성은 각기 그 형세에 있어서 대소·강약의 차가 있었다. 한 군현이주위의 지역을 흡수함으로써 대읍이 되고 많은 군현과 향·소·부곡을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토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군현구획의 광협과 재지세력의 강약은 서로 비례하였다. 그리하여 당초에는 대등했던 군현이 이제는 主邑 또는 領·屬縣으로 분화되고 같은 토성이 한쪽은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되고, 다른 한쪽은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마침내 토성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읍세가 큰 곳의 토성들은 그 관내에 많은 任內土姓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여초부터 상경종사한 세력은 주로 이들 주읍의 토성들이 었다.

군현토성이 역대 지배세력의 공급원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질적인 차가 많았다. 종전의 九州·五小京이나 고려시대의 京·州·府 등 大邑의 토성들은 귀족과 관인들을 계속 배출시키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군현은 수백년이 경과하도록 이렇다 할 관인을 내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왕경과의 거리의 원근과 외관의 유무에 따라 현저한 차가 있었다. 재지토성의 진출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경에 가까운 군현일수록 상경종사의 시기가 빨랐고 외관이 있는 주읍일수록 그 고을 토성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역대 지배세력의 변천과정은 재경세력이나 재지세력을 막론하고 계속 교체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중앙에서는 세력교체가 빈번한 반면 지방에서는 완만하였다. 재경세력도 그 일문이 고관요직을 장악하는 데서 계속 權貴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듯이, 재지토성들도 그 고을 戶長層을 확보하는

<sup>24)</sup>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데서 一邑의 영도권을 계속 지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초 이래 상경종사하는 가문은 대개 군현 호장층의 자제였고 후세의 명문거족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고려 이래 군현은 邑治(邑內)·직촌 및 임내로 구획이 편성되어 있었다. 군현의 읍치는 관아와 邑司를 중심으로 관청시설이 있고, 토성이족을 비롯하여官屬과 시정배가 거주하는 異姓雜居지역이었다. 임내는 본읍의 축소판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며 직촌에도 村姓을 중심으로 異姓이 혼성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대체로 15세기까지도 일반 촌락에는 두 개 이상의 성씨가 혼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후세에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사족 중심의 동족(同姓)부락은 17세기 이후에 보급되었다.

여말선초의 호적이나 읍지를 통해 살펴보면 재지토성의 통혼은 대개 同邑土姓간의 신분內婚과 동성동본간의 族內婚이었다. 토성이족이 상경종사하여 재경관인이 되면서부터 통혼권은 확대되었다. 각 읍의 호장층은 正朝戶長 또는 微稅調役 등 업무로 경향간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其人・京邸吏 등 각 읍 이족간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현직호장과 재경관인간에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이족에서 사족화하면서 동성혼을 기피하고遠婚하거나 '동성불혼'의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하였다. 특히여말선초에는 자녀균분상속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外孫奉祀가 흔한 동시에친손・외손의 차별이 별로 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족제도와 사회적인 관념으로 인해 사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대개 처향을 택했던 것이다. 나중에는 동족부락으로 성장하였지만 16세기 이전까지는 대개 子와 壻가 동촌에거주하였고 그 결과 친가・외가 또는 처가의 일문이 한 촌락을 점거하였던 것이다.

사림파의 가계는 대부분 군현의 토성이족에서 유래하였고 사족화의 시기는 가문에 따라 선후의 차가 있지만 대체로 14세기에 가장 많았다. 우리는 17세기 이후의 관념으로 억말선초를 관찰하려는 데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첫째 당시의 향리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중앙집권체제와 외관의 통치체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지방 토성의 出仕路 가운데 과거에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두는 감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향리세계도 호장층과 하급향리층과는 구

분되어야 한다. 15세기까지도 호장층의 자제는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관인화의 길이 열려 있었다. 지방토성은 재경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진출이 활발하였다. 무신간의 빈번한 정권쟁탈과 정권의 불안정, 신분제도의 문란, 원의 지배 및 끊임없는 북로남왜로 인해 군현이족은 사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과거를 통해 진출하기도 하였고 麗元관계에서 출세하기도 하였으며, 군공으로 첨설직을 얻어 品官으로 향상하였다. 사림파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工曹典書・版圖判書 등 첨설직과25) 合同正・史同正・軍器監 등影職과 檢校職 및 軍職・雜職 등을 발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신분을 고양시켜 나갔다. 그래서 여말을 경계로 하여 군현이족의 사족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그 때까지 그 고을의 이족을 대표하던 토호들은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포착하여 품관이 되었으며, 이들은 선초에 閑良계층으로도 나타났다. 이에반해 현임 향리들은 현직에 만족하다가 미처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왕조에 들어와서는 사족화의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고 계속 이족으로 남게 되었다.

여말선초에 걸쳐 사회신분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는 재지사족이 광 범하게 존재하게 된 점과 토성에서 사족과 이족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간 것 이라 하겠다. 무신란을 계기로 田柴科體制가 붕괴되면서 토지의 사유화와 농 장의 발달이 일반화되어 갔다. 또 기성 관인들의 낙향생활과 지방의 중소지 주층이라 할 수 있는 향리 자제의 대거 관계진출은 마침내 지주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신흥사족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조선왕조의 중앙 집권화와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외관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족의 지위는 현 저히 저하되어 갔고 그들의 권한도 계속 위축되어 갔다. 또한 고려 후기 이 래 지방향리 자제들의 급격한 관계진출과 첨설직의 남발은 결과적으로 관료 군의 포화상태를 유발시켜 여말에 오게 되면 기성사족만으로도 內外官僚기 구를 충당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관인의 배출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향리자제의 계속적인 관계진출은 기성사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의 독점적인 특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족의 새로운 관계진출을 봉

<sup>25)</sup> 李樹健, 앞의 책(1979), 158~160쪽. 鄭杜熙、〈高麗末期의 添設職〉(《震檀學報》44, 1978).

쇄한 데서 사족과 이족의 분화가 점차 명확해져 갔다.

조선 초기까지도 '吏'職은 文·武와 함께 3대 출사로의 하나였다. 그러던 것이 양반지배체제의 확립에 따라 文·吏의 업무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사족과 이족의 분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사족과 이족의 분화에는 또한 세대의 소원에서 오는 친족 관념의 희박과 향촌사회의 변모에서도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말까지만 하더라도 부자형제 사이에 향리와 관인이 공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전의 형제·숙질관계가 三從·四從관계가 되고 有服之親이 이제 路人과 다름없는 관계가 되면서 양자의 구분은 더욱 확실해졌다.

고려시대에는 군현토성에서 분화된 재경관인과 재지이족이 제각기 자기의위치를 지키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양자의 공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여말부터 상경관인들의 낙향생활과 재지적 기반구축 및 그로 인한 재지사족의 광범한 존재로 인해 결국 중앙의 관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에 적극 관심을 가지면서 비로소 留鄕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유향소의 설치 운영과 함께 社倉・鄕規・鄕案 등이 사족과 이족을 더욱 분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분화 현상은 15세기로 넘어오면서 더욱 촉진되어 같은 토성 출신이면서 한쪽은 상경종사하여 재경관인이 되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이족과 재지사족으로 구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양반과 중인이란 계층 분화로까지 발전되어 갔다. 이는 또한 양반은 관리직인 '官'을, 이족은 행정실무인 '吏'事를 담당한다는 데서 소관직무까지 확연히 구분되어 갔다. 양자의 구분은 다시 그들의 주거지까지 구분짓게 되었다. 대체로 여말까지는 재지토성이 각기 읍치에 거주했으나 그 이후부터 이족(향리)에서 벗어나 사족화하면서 읍치의 외곽 촌락 또는 부근의 임내지역이나 인근 타읍의 외곽지대로 복거하거나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시 가족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도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즉 男歸女家婚制의 보편화와 자녀균분상속제가 철저히 지켜진 사회에서 자 녀 嫁娶를 시킬 때 딸을 출가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사위를 영입한다는 뜻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娶妻와 동시에 처가로부터 처남과 동일한 양의 妻財를 분금받았던 것이며, 그 분금받은 재산은 처가소재지나 그 처가의 연고가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분가하여 처향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 결과 고려말 이래 재경관인이 낙향하거나 기성사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대개 처향과 외향을 택했던 것이다. 한편 임내의 이족들은 그 임내의 소멸과 동시에 주읍 향리에 흡수되거나 다른 지방으로 유망함으로써 기존의 토착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한 곳은 신흥 재지사족들의 세력권화하였다.

한편 재지사족들은 여말선초부터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군현에 따라 그 鄕邑을 영도할 수 있는 문벌과 학덕을 갖춘 사족의 父老・子弟에 의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 조직은 고려 이래 邑司를 구성했던 향리들의 '壇案'과 같이 조직 참가자의 명부, 즉 향안(鄕錄・鄕座目)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며, 의결기관이면서 鄕射・鄕飲酒醴・養老禮・鄕約讀會 등의 거행과 기타 회의 친목의 장소이기도 한 鄕會 또는 사무소이면서 공동의 집합장이기도 했던 유향소를 갖고 있었다. 향안에는 이른바 '世族'이어야 입록할수 있었다. 세족이란 그 고을에 세거하면서 문벌과 地望을 갖춘 사족이란 의미를 지녔다.26) 군현토성에서 상경종사했다가 낙향한 가문, 이족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한 가문, 타읍・타도출신의 기성사족으로서 이주하여 벼슬・학문・덕행을 갖춘 가문의 인사들이 향안에 들 수 있었다. 대・소과에 응시하거나 仕宦上의 署經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가문이 1차대상이 되었으며, 향안을 '三參錄'이라 하듯이 父系를 비롯하여 外系와 妻系에 하자가 없는 가문이어야 했다. 이러한 유향소는 재경관인들의 조직체인 京在所와 연결되어 명실상부한 재지사족의 조직체로 존재하였다.

경재소는 신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재경관인과 연결된 재지사족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사회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유향소와 함께 거의 동시에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 운영되었다. 그 조직은 품계에 따라 2鄕에서 8향까지로 한정했다. 경재소는 관할 유향소 임원의 任免權

<sup>26)</sup> 鄭經世,《愚伏集》 권 15, 尚州鄉案題名錄序.

을 가지며 향리규찰과 인재천거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중 인사들로부터 갖가지 청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재소의 예산은 해당 고을의 유향소나 京邸에서 공급되었다.

한편 이와 동시에 향촌사회에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제규약으로 鄉規‧鄉 約‧洞約 및 각종 契가 조직되어 있었다. 향규는 유향소의 조직과 운영 및 향촌규제에 관한 규약으로, 향안 작성과 함께 여말 이래 재지세력들에 의한 유향소가 설치 운영되자 각 읍별로 제정되었던 것이다.27) 이러한 규약은 종 래의 향도관계 규정과 함께 실시해 오다가 중국의 향약이 보급되자 종전의 불교적이고 음사적인 의식과 관습이 주자학적 실천윤리로 대체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향규의 향약화 현상을 가져왔다. 사족들은 이러한 규약들을 통해 그들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지배하에 있던 하 층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재지사족들은 위와 같은 자체 조직과 내부규약을 통해 향촌지배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사림의 사회적 기반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림파형성의 사회적 기반은 무엇보다 강력한 토성이 반근 착절하여 재지세력을 대표하던 이족과 사족을 공급시키는 데 있었다. 각 읍 토성들은 고려 후기부터 상경종사를 활발하게 하여 재경관인이 되어 기성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타도 출신 사족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 3) 사림의 교육과 학통

사림파의 계보와 같은 학문적인 師友淵源 관계는 시대의 변화와 후세인에 의하여 지나치게 획일화된 감이 없지 않다. 주자학의 보급과정과 사림파의 형성배경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조선왕조의 국가통치 이념인 주자학은 安珦·權溥·李齊賢 등 신흥사대부에 의해 수용되어 여말의 成均館과 지방의 鄕校교육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sup>27)</sup> 田川孝三、〈郷案について〉(《山本博士還歷記念東洋史論叢》, 1973).

<sup>----,〈</sup>郷憲と憲目〉(《鈴木俊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75).

<sup>-----, 〈</sup>李朝の鄕規について〉(《朝鮮學報》 76, 78, 81, 1975, 1976).

공민왕은 재위 16년(1367)에 성균관을 重營하고 李穡으로 하여금 成均館 大司成을 겸하게 하고 金九容·鄭夢周·李崇仁 등 經術之士를 敎官에 겸직하게 하였다. 이후 성균관을 중심으로 문풍이 크게 진흥되었다.<sup>28)</sup> 특히 국초에는 진취적인 분위기에다 능력위주의 인재등용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사류들이 과거를 거쳐 성균관에 모였고 거기에서 학덕이 인정된 자는 성균관 교관으로 발탁되었다.

한편 중앙의 성균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학 즉 程朱性理學이 진흥되어 재경관인이 그것에 훈도되어 나갔듯이, 지방군현에서는 향교가 많이 정비되고 문과 및 성균관 출신의 문신들이 수령으로 나가서 지방교육을 장려하였다. 여말에 신흥사대부의 대거 등장과 국가의 문교정책 장려로 수령의 직무에 '興學校'란 조항을 중시하였고 또 성리학에 훈도된 登科士類들이 수령으로 부임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선초에 오게 되면 재지사족으로 상경종사한 신진사류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봉양을 위한 '爲親乞郡'을 숭상하여 본관지 또는 부모소재읍의 수령으로 나갔다. 15세기 사림파에 속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그들은 지방교육을 진작하고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敎民化俗하였던 것이다.<sup>29)</sup>

신홍사대부들은 왕조 교체과정에서 양분되어 하나는 집권세력으로 계속 재경관료가 되었고 다른 일파는 정몽주·이승인 등과 같이 순절하거나 吉再· 元天錫 등처럼 재야세력으로 남았다. 그런데 15세기 전반까지는 전자가 관학을 중심으로 관료양성을 주도하면서 신왕조의 문물제도 정비에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색의 학통을 이은 鄭道傳·權近·河崙 등이 바로 이 계열에 속하였다. 한편 유교적인 정치이념에 투철했던 태종·세종은 적극적인 문교정책으로 이색·정몽주 문하에서 훈도된 하륜·黃喜·許稠·趙庸·尹祥 등을비롯한 문신들을 文翰과 교관직에 포진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학덕을 겸비한 文士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여 성균관과 향교에 배치하였다. 이에 성균관을 중심으로 신홍사대부들이 운집하여 마침내 일군의 성리학과를 형성하였다. 특

<sup>28) 《</sup>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穑.

<sup>29)</sup> 李樹健, 앞의 책(1979).

히 태종은 전왕조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정몽주를 추숭하였다. 정몽주는 여말에 이색이 추허한 대로 당시 사류 중에서 성리학에 가장 정통하였고 《朱子家禮》에 의거, 家廟를 세우고 喪祭를 받들며 안으로는 五部學堂을 세우고 밖으로는 향교를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15세기 전반의 교육은 관학이 주도한 종래의 儒佛未分化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程朱의 《四書集註》와 《小學》을 교본으로 한 經學 위주였으며 또한 종전의 詩賦 일변도에서 벗어나 經術과 詞章을 다같이 중시하는 실용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사림파가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한 시기는 훈구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성종대부터였다. 그들의 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 여말의 혼란기에 군현 이족에서 과거·군공 또는 첨설직 등을 통하여 품관으로 신분이 상승된 재지의 중소지주 계층이었다. 그들은 祖先전래의 탄탄한 사회 경제적 기반과 성리학적 소양을 발판으로 향혼사회의 지배기반을 구축해 갔다. 동시에이들은 절의와 명분을 중시하여 여말의 왕조 교체기에는 낙향하였고 세조의왕위 찬탈을 불의로 간주하는 공통의 정치적 성향과 학문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金宗直→金宏弼→趙光祖일파로 이어지는 사림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학》을 학문과 처신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소학》은 주자가 三代의 교육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經史子集의 여러 경전에서 추출 선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유교적인 이상 실현에 가장 적합한 교과목이었다.30)

《소학》은 제경전에서 立敎・明倫・敬身의 3대 강령에 적합한 내용을 선집한 것이기 때문에 4서와 5경을 유교의 강령이라 한다면 《소학》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시행세목이라 할 수 있다. 주자학이 안향을 위시한 여말의 신흥사대부에 의하여 수용되고 보급되었듯이 《소학》은 유교적인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사림파에 의하여 숭상되고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소학》은 주자학의 수용과정에서 《주자가례》와 함께 성리학 보급의 2대 수단이었다. 결국 양자의 보급과정은 궤를 같이 하였고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김굉필은 《소학》의

<sup>30)</sup> 李樹健、〈李朝時代「小學」教育에 대하여〉(《嶺南大論文集》2, 1969).

화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당시 《소학》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이 다른 학파와 구별되는 김종직학파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15세기 사림파가 16세기 조광조일파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어 나갔듯이, 《소학》교육도 '己 卯名賢'들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더욱 숭상되어 갔던 것이다.

15세기초 관학에 의해 주도되었던 《소학》 장려책은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분히 형식적으로 관학기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실시되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김종직일파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학계통에서의 《소학》 교육은 그야말로 실천궁행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입장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소학》은 '爲己之學'의 기본교재가 되었고 사림파를 훈구파와 구별하여 학문적 내지 교육적으로 특징짓는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김종직일파에 의하여 고조되었던 이러한 《소학》 숭상풍조는 戊午・甲子土禍로 인해 한때 침체되었으나 김굉필의 학통을 계승한조광조일파에 의하여 다시 존숭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교정책의 기본과제로우용되었다.

《주자가례》는 여말의 신흥사대부에 의해 수용되어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권장되었으나, 초기에는 일부 사림파가문에 한해 실시되다가 성종대부터 사림세력의 성장과 함께 확대 보급되어 갔다. 《소학》교육이 김종 직일파에 의하여 주도되어 나갔듯이 《주자가례》에 의한 喪祭禮의 시행도 이들 사림파에 의하여 솔선 실천되어 갔다. 정도전·권근·하륜·허조 등 집권 사대부들의 건의에 의하여 국가가 각종 의례를 제정 실시하고 정책적으로 《가례》를 刊預하여 家廟를 세우고 상제의식을 《가례》대로 실천하게끔 導民 化俗하려 했지만 그것은 단시일내에 성취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재야사대부인 사림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천되어 나갔고, 한편 그들의 솔선수범에 의하여 향촌사회가 따라갔던 것이다.

이러한《소학》과《가례》등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사림은 점차 확산되어 갔다. 여기에는 특히 각 지방 군현에 사림파 인사가 수령으로 부임하여 지방교육을 일으키고 성리학을 보급시켜 나간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각 군현별로 성리학의 보급과정과 사림파의 형성배경을 살펴보 면, 길재가 선산지방에 낙향함을 계기로 이곳에 성리학적 분위기가 먼저 조 성되었고 김종직이 선산과 밀양을 왕래하고 함양군수로 재임한 관계로 이일대에 사람파 인사가 배출되었다. 이와 같이 문풍을 진작시키는 데는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거주하거나 수령으로 재임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사림의 세계는 길재→김숙자·종직 부자→김광필·정여창으로 이어지는 단선의 좁은 범위만은 아니었다. 성리학이 결코 사림파의 전유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림파도 또한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그 일파에만 국한시킬수 없다. 정몽주의 학통 계승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길재로 이어져 私學계통으로 내려온 줄기보다는 권근·하륜·변계량 등 재경관료와 성균관 내지 집 현전으로 이어지는 관학계통의 줄기가 훨씬 굵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학의 교육에 《소학》을 기반으로 하고 《주자가례》에 의한 喪祭奉行, 3년상과 廬墓 실행, 關佛과 淫祀禁斷 등의 '爲己之學'과 성리학적 실천윤리는 결코 영남지방에 한정된 것도 아니며 또 김종직일파만이 실행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김종직 당시에는 성리학과 사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두텁게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말선초에 걸쳐 대표적인 학자나 文士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충절을 제하면 그들은 정몽주・길재 등 이른바 정통 성리학자의 학문 태도와 처신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 정도전・권근・하륜・허조・河濱・조용・윤상・鄭麟趾・申叔舟・姜希孟 등이 모두 기초적인 교육을 《소학》에 두었고 벽불과음사금단을 실행하였으며 《가례》대로 상제를 봉행하고 있었다.

김종직의 3대 제자라 할 수 있는 김광필·정여창·김일손의 학문적인 연원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김종직의 학통만을 받았다고는 결코볼 수 없다. 김광필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현풍과 야로 및 성주를 왕래하면서 독서하였고, 金孟性과 교제하면서 강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內院寺에 들어가 독서하다가 20세가 넘어서 김종직 문하에 들어갔던 것이다. 정여창은 처음에는 李寬義에게 수학하여 성리학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김종직이 함양군수로부임해 오자 비로소 그에게 수학하였으며, 그의 동향인인 兪好仁・趙孝仝・金悌臣과도 일찍부터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다. 김일손 형제도 金克→→金孟으로 이어지는 가학을 계승하면서 《소학》을 비롯한 기초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고 외가·처가를 왕래하면서 수학하다가 17세에 처음으로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갔다.

성리학이 기호지방에 보급된 시기는 영남지방의 경우와 거의 같고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 가운데 영남지방과 인연이 없는 인사 중에서도 성리학을 수용하고 유교적인 실천윤리를 실행하는 자가 많았다. 尹龜生・朴尙衷・李詹・李坡・李克培・金時習・許琮・尹孝孫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상과 같이 사림파의 기반은 15세기에 이미 기호지방에도 보급되어 있 었고31) 영남지방에도 김종직일파만이 사림파를 독점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오ㆍ갑자사화를 겪으면서 김종직일파는 거의 몰락했지만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족에서 사림파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림파의 성장은 15세기 이래 하나의 시대적인 대세였다. 조선왕조의 지배세력이 사 대부였고 그들은 신유학에 철저히 훈도되었으니 그들의 진로는 이미 정해 져 있었다. 위의 양대 사화가 이러한 진로를 잠시 지체시킨 데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15세기에 조선왕조는 유교적인 통치체제와 그 통치기구를 운 영해 나갈 인적 자원인 사대부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5세 기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4대 사화를 차례로 겪었지만, 그것은 훈구파의 몰락과정인 동시에 사림파의 성장과정이었던 것이다. 김종직계통이 김굉필 ·정여창·김일손 등으로 이어진 것은 그만큼 성리학과 사림파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시 조광조・金安國 등 기묘명현으로 계승되면서 사림파는 마침내 16세기 중반에는 兩界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특히 영남지방은 바로 김종직일파의 淵藪였으니 사림파의 성장은 타도에 비하여 가속도로 급진전하였다. 중종 10년(1515)경을 전후하여 김종 직→김굉필→조광조일파로 이어진 기묘명현이 집권하자 성리학적 이상을 직접 정치에 이용하여 《소학》교육과 《가례》에 의한 유교적인 실천윤리를 정치일선에서 강조하였다. 그 결과 양대 사화로 인해 칩거하던 영남의 잔류 사림과 신진사류가 우후죽순처럼 대두하였다. 조광조일파가 바라는 인재는

<sup>31)</sup> 李樹健, 앞의 책(1979). 李秉烋, 앞의 책(1984).

바로 사림파적 성향의 인사였다. 이들은 김종직·김광필 등의 문하와 조광 조와 교유하던 인사에 많았으니 자연히 영남과 기호지방에서 많이 공급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영남사림파를 16세기에 와서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金安國이었다.32) 그는 김굉필의 제자인 동시에 조광조와는 동문이었다. 그는 기묘명현이 집권할 당시인 중종 13년(1518)에 경상도감사로 재임하면서 도내의 재지사류를 발굴하여 조정에 적극 천거하였고 別邑을 巡歷할 때마다 지방자제교육과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권장하였다. 그가 천거한 사람은 모두 32명이며 재행을 겸비하고 효제를 실천하는 재지사족으로, 김종직·김굉필의 문도가 많았다. 김안국은 기묘사화 후에도 사림파를 영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다. 李彦迪과 權機・李滉 등 나중에 영남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의 거처에 출입하였으니 김안국은 15세기의 영남사림파와 16세기 영남학파와의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孫昭・孫仲暾의 계열에서 이언적이 나오고 권벌・李堣・李賢輔 등의 기반 위에서 이황이 나왔으며, 정여창・김굉필・김 일손 등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曹植이 경상우도에서 나왔다. 마침내 이들 학자에 의하여 영남학파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33)

신왕조의 건국을 내심으로 반대하였던 국초의 재야세력과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절의파의 계통을 계승한 사림파는 마침내 정몽주→길재→김숙자·종직→김굉필로 학통을 이었고, 기묘사화를 치른 뒤 인종대에 가서는 조광조를 김굉필에 연결시키면서 이와 같은 계보의식이 정설화되어 갔다. 또 기묘명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수인 조광조의학통을 그의 스승 김굉필에 잇고 그것을 다시 '東方理學之祖'인 정몽주와 연결시키는 데서 위와 같은 계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16세기 후반 이황·기대승 등에 의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였다. 또 16세기말에가서 사림파가 중앙정계를 장악한 후 동방 5현의 文廟從祀論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대두되자 성리학 내지 사림파의 학문적인 계보가 道統문제로 발전하

<sup>32)</sup> 李秉烋、〈慕齋 金安國과 改革政治〉(《碧史李佑成教授定年記念論叢 民族史의 展開 コ 文化》上、 창작과비평사、1990).

<sup>33)</sup> 李樹健,《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

였다. 이러한 학문적인 사우연원관계와 계보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시대의 진전에 따라 후세인들이 자기의 학맥과 지연 내지 자기 당색의 우월을 강조한 나머지 그렇게 도식화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림파에 의해 제시된 계보는 문제가 없지 않다. 먼저 정몽주34)→길 재의 관계는 당시의 실정과 거리가 있다. 길재의 학문적인 授受에는 家學을 비롯하여 朴賁・이색・권근 및 정몽주가 거론되면서 그 중에서 정몽주와의 관계가 가장 박약했다고 보이는데 후대의 계보는 정몽주→길재로 정리되었다. 당시 신왕조의 입장에서는 전왕조의 대표적인 충절로 정몽주와 길재를 선정하여 褒崇을 아끼지 않았고 조정의 공론도 양인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이는 물론 태종의 의도와 관련되고 정몽주와 사우관계에 있던 인사가 조정에 포열해 있었다는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양인의 학덕과 처신이 전왕조의 충절을 대표하는데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정몽주는 끝내 '以身殉國'하였고 길 재는 '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켰으며 양인은 나란히 《삼강행실》의 충신전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정몽주→길재의 학통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길재와 김숙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길재는 여말에 낙향한 후 태종의 부름을 받고 정종 때 잠시 상경한 것을 제하면 줄곧 고향인선산에서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지방자제 교육에 전념하였다. 길재는 《주자가례》대로 관혼상제를 실천하고 주자가 편집한 《소학》과程朱集註의 四書를 교본으로 하여 지방자제를 교육하였다. 그 때 동향인인김숙자도 그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였고 나중에는 향교에서 수업하였다.35)당시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여말의 사류들이 길재와 함께 대거 낙향하면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은 자연히 이들과 연결되었던 것이며 나중에 세조의 등극에서 단종 지지세력들이 다시 여기에 가담하였다.

김숙자는 선산부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는 父祖 밑에서 수학하였고 16세 때에 향교에 출입하였으며, 26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고 세종 원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이후 내외 교관과 수령을 역임하였다. 그는 선산

<sup>34) 《</sup>高麗史》 권 117, 列傳 30, 鄭夢周.

<sup>35)</sup> 吉再、《冶隱言行拾遺》年譜.

·성주 敎授와 高靈·開寧 현감을 지내면서 길재의 학풍을 전파시켜 나갔다. 그의 宦歷은 대개 미관한적으로 대부분 교수적이었다. 그의 祖 金恩有는 判官과 司宰令을 역임하였고 父 金琯은 進士출신으로, 그는 어릴 때 父祖로부터 직접 수학한 가학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적인 수학의 기초위에 다시 鄕先生인 길재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고 다시 향교에 속하였는데 당시 선산부사는 鄭以吾였다. 김숙자는 선산향교에 속해 있을 때는 일반校生의 모범이 되었고 黃澗현감이었던 尹祥을 찾아가서 《周易》을 배웠으며, 사마시에 합격한 다음에는 성균관에서 유생들과 경술을 강론하면서 자기 학문을 심화시켜 갔다.36)

그의 師友관계를 보면 대·소과 때의 試官을 위시하여 林載(同鄉人, 인척) ·길재·趙庸 및 윤상 등을 들 수 있으며 金峙·金彭老·金從理 등의 친족 과 동향인 河澹·李孟專·蔣敦義·黃郁·康愼·盧浩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선산은 김종직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길재와 김숙자를 중심으로 성리 학자들이 유집하여 하나의 학문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김숙자는 가학과 길재를 중심으로 한 사우 외에 재경사대부와 접촉하였고, 권근의 학통을 이은 변계량·허조 등과 성균관을 중심으로 조용·윤상·金末 등과도 교유하면서 학문적 소양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다. 즉 그는 사학적인 기반 위에서 관학을 포용하였으며 재경관인과 재지사족간을 왕래하면서 그의 아들 김종직이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놓았던 것이다.

김종직은 세종 13년(1431)에 밀양부 서쪽 大洞里에서 출생하여 가학을 전수하였다. 길재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김숙자는 자기의 제자교육에 《童蒙須知》・《幼學字說》・《正俗篇》을 거쳐《소학》・《孝經》・《大學》 및《論語》・《孟子》등 순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철저히 밟게 하였다. 그는 4서 5경을 父로부터 차례로 배운 다음에 특히《소학》을 학문의 기초로 삼았고 어릴 때부터 시를 잘하여 문명이 크게 떨쳤다. 그는 가정에서 또는 부의 任地에서 그의 여러 형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19세에는 부를 따라 상경하여 南學에 입학하였는데 그 때부터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22세에 김맹성과 함께

<sup>36)</sup> 金宗直,《彛尊錄》下, 先公事業第四.

能如寺에서 독서하였으며 23세 때인 단종 원년(1453)에 진사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주역》등 경전을 탐독하였다. 세조 원년(1455)에 東堂試에 합격하고 그 3년에 〈弔義帝文〉을 지었다. 29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세조의 年少文臣 선발에 李坡・李孟賢 등과 함께 참가하여 이후 학문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세조는 소장문신들을 天文·風水·律呂·醫學·陰陽·史學·詩學 등 7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선발하였는데 김종직은 史學門에 속하였다. 이 7문에 분속된 문신들은 김종직과 같은 재지사족은 얼마되지 않고 대개 훈구세력에 속하는 京華子弟가 많았다. 김종직은 이들과 교유하면서 앞으로의 사림파의 진출에 포석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종직은 세조 10년 8월에 이러한 세조의 '文臣分隷七學' 조치에 반대하고 사학과 시학을 제하고 나머지 잡학은 儒者가 힘쓸 바가 아니라고 上奏하여 세조의 노여움을 사서 한때 파직되었으나 곧 복직되었다. 이후 그는 嶺南兵馬評事가 되어 여러 읍을 순행하였으며 세조 13년에는 藝文館副修撰으로서 《世祖實錄》을 편찬할 때는 記事官으로 참가하였다. 한편 그는 성종원년(1470)의 재행겸비자 30명 선발에 선정된 바 있었다. 그후 예문관수찬 겸知製敎에다 經筵檢討官과 春秋館記事官을 겸하고 있다가 養母를 위해 함양군수로 부임하였다. 이 때부터 그의 문하에 학도가 운집하였다. 그는 治郡에 있어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실행하였고 제자교육에는 길재・김숙자의 교육방법대로 《소학》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 김종직은 봄・가을로 향음주례와 양로례를 행하고 孝悌와 《주자가례》대로 喪祭봉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때 김굉필・정여창 등이 수학하였다.

김종직은 성종초부터 신숙주·강희맹 등 영남출신의 훈구대신들로부터 적 극적인 후원을 받았고 자신의 학문적인 소양과 시문 및 치군 성적으로 성종 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를 중심으로 주위에 兪好仁·曹偉 등 당대를 대표하던 문사들이 '好文之主'인 성종에게 영합될 수 있었다.

그는 성종 7년에 '爲親乞郡'하여 선산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 때 친척과 故舊 등 同府人을 위시하여 각지로부터 그에게 수학하기 위해 학도들이 모여들었다. 성종 초년은 함양군수와 선산부사의 재임기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재지사족의 자제는 물론 遠方에서도 사류들이 來學하였다. 성종 10년

이후 그는 侍從·文翰·銓注의 淸要職을 계속 맡으면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당시 鄭昌孫·尹弼商·李克培·徐居正 등 훈구대신과 함께 경연에 입시하면서 강론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김종직의 사우관계와 문도들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의 학문적 연원 및 배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父祖 이래의 가학에다 길재→김숙자로 이어지는 선산이란 지역의 성리학적 분위기가 기반이 되었다. 그는 성균관 생활과 경연 侍講 등의 과정에서 재경문신들과 강론하면서 자기 학문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의 부친인 동시에 유일한 스승이었던 김숙자에 의하여 김종직의 학문은 자리가 잡혀졌고 선배 또는 동년배의 재경학자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의 폭이 넓어졌다. 그는 경술과 문장을 겸비하고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실행함과 동시에 詩賦와 詞章에 능하여 일대를 풍미하게되었으므로, 그의 문하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따라서 훈구파에 대칭되는 사림파의 영수로 군림하게 되었다.

당시 사림파의 학문적인 전수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일단 가학 등을 통해 학문이 성취된 다음에 경향간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혹은 座主와 門生관계에서, 혹은 사환상의 교유나 학문적인 토론과 질의와 같은 접촉을 통해 사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균관에 출입하는 유생도 기초적인 교육은 가학이 중심이었다고 본다. 15세기 사림파의 학문적인 전수관계와 사우관계를 살펴보면 바로 가정적인 학문의 전통이 기초가 되었고 거기에다 혈연적인 관계와 지연적인 유대가 서로 얽혀 있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의 수용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각지의 사류가 모여들어 학문세계를 형성하였고 그들은 또한 경향간을 왕래하면서 상호 교유하였기 때문에 학문의 세계와 사림간의 접촉범위는 아주 좁았던 것이다.

김종직의 문인록은 실록과 후세의 문집에 따라 차이가 난다. 먼저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출신과 비영남출신으로 나눌 수 있고, 학문적인 경향에 따라 살펴보면 정통성리학의 입장을 견지한 金宏弼·鄭汝昌 등과, 시문으로 유명하였던 金馹孫·조위·表沿沫·유호인 등이 있겠고 이른바 方外人에 속하는 鄭希良·南孝溫·洪裕孫 등으로 구분된다 하겠다. 또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비영남 출신과 방외형문사와

宗室출신이 많고 후자에는 영남출신과 처사형인사가 많았다. 김굉필은 한때 그의 사문 김종직의 현실안주 태도를 비판하였지만 자신은 정여창·유호인 ·조위 등과 함께 온건파에 속하였다.37)

이와 같이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사림파가 표면상으로는 공통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여러 파로 나뉘었다. 金時習 과 남효온 등은 경화자제로서 서울의 분위기에서 생장하였고 홍유손은 현직 향리의 자제라는 데서 처음부터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출신 인사와는 성향이 달랐다.

한편 성종대부터는 종실 가운데 시문과 가악에 능하여 당시 대두하고 있던 사림파와 교유하는 자가 많았다. 李深源 부자를 비롯하여 李摠·李賢孫·李貞恩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들은 종실이란 이유로 상당한 경제적기반을 가지고 학문과 가악을 수련하면서 朝士들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文才가 있으면서도 '宗室不任官'이란 국가의 제도에 얽매어 관직에서배제된 유한계층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을 경시하고 時政과 當路者를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연유로 사림파와 연계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김종직 문도 가운데서도 젊고 재능있는 소장인사는 서울의 분위기에서생장한 일부 경화자제와 합세하여 훈구파에 전면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남효온의〈師友名行錄〉, 김굉필과 정여창의〈사우문인록〉을 살펴보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세기 사림파의 범위를 말할 때 위의 김종직 문인을 위시하여 김굉필·정여창·남효온 3인 의 사우문인록을 포함한다면 거의 누락된 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림파가 영남지방에서 형성되어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가듯이 김종직의 문인은 그 구성비율이 영남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데 반해 김굉필과 정여창의 문인은 기호지방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sup>37)</sup> 金宗直・金宏弼・鄭汝昌 3인의 문인록에 의거해 그들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직의 문인 59명을 姓貫 및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1) 橫南姓貫으로영남거주가 30명, (2) 영남성관이나 타도거주가 6명, (3) 타도성관으로 영남거주가 9명, (4) 타도성관으로 타도거주가 14명이며, 김굉필의 사우 30명은 영남이 15. 비영남이 15명이며, 정여창은 영남과 비영남이 19:20명으로 나타난다.

15세기 후반에 김종직을 宗匠으로 하여 확립된 사림파는 정치의 公道와官人의 正道를 내세우면서 당시 세조를 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훈구파의권귀화를 비난하였다. 사림파는 대개 재경시간보다는 재야시간이 많고 지방수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과 민중의 생활상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기반은 중소지주이면서도 자신들은 청빈한선비의 생활을 하였고, 자기들의 경작농민과 노비를 地主 대 佃戶 내지 主奴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민생안정의 편에서 훈구파와 대결하였던 것이다. 사림파의 대거진출이 마침내 戊午土禍를 유발하였고 그 후 세번의 사화를 통하여 가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꾸준히 자기성장을 계속하여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결국 사림파가 중앙정계를 장악하는 결과를 이루어 놓았다.

15세기의 사림파는 고려시대의 불교적이고 음사적인 생활양식을 《소학》과 《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성리학적 실천윤리와 의리정신을 내세워 훈구세력의 권귀화를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향소와 사마소를 중심으로 향촌지배체제를 종래의 이족에서 사족 주도형으로 대치시키고 지방교육을 진흥시킴으로써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16세기 후반의 사림과는 달리, 아직 중소지주의 위치에 있었고 經術과 詞章 및 吏事(행정기능)를 겸비하였던 것이며 집권층의 秕政을 비판하고 민중의 편에서 제도적 개혁과 민생의 향상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1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조선왕 조 집권체제의 해이와 함께 그들은 토지와 노비를 중식시켜 가면서 鄉曲을 무단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 학문경향도 성리학의 현실적·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사변적인 理氣哲學과 번쇄한 禮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림세력은 확대되어 갔고, 그들의 토지·노비증식책에 의하여 公田의 私田化와 양인의 노비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과거의 중소지주가 대지주 또는 지방 토호로 탈바꿈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추세는 결국 자영농민의 몰락과 농촌의 피폐를 초래하고 말았다.

〈李樹健〉

### 2.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 1) 사림의 중앙진출

우리 나라의 경우 '土林'이라는 용어는 여말선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戊午・甲子士禍를 체험한 후인 중종 때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원래 초기의 사림은 여말선초의 왕조교체와 그에 따른 변동 속에서 향촌에 은거하여 성리학의 탐구에 몰두하던 성리학자들을 주축으로 하되, 좀더 폭 넓게는 약간의 성리학적 소양의 바탕 위에 詞章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儒士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처럼 처음에는 독서인층 또는 선비의 무리라는 평범한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림은 그 일부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부터 그개념상에도 변화를 가져와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士林派10란 뜻을지닌 역사적 용어로 되었다.

곧 재지사족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金宗直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리학과 《朱子家禮》의 보급을 통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을 도모하였고, 그를 통해 자파세력의 확립을 모색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지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호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강렬한 동류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명문화된 규약은 없었지만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 상호 규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림파는 정치세력으로서 그 역사적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사림파는 고려 후기 재지중소지주인 향리층에서 진출한 新進士大夫2)들

<sup>1)</sup> 사림파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가 참고된다.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李秉烋,《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一潮閣, 1984).

李泰鎭,《韓國社會史研究》(지식산업사, 1986).

<sup>2)</sup> 李佑成、〈高麗朝의「吏」에 對하여〉(《歷史學報》 23, 1964).

이 고려·조선의 왕조교체과정을 계기로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라진 두 계열 가운데 전왕조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며 향촌사회에 숨어 학문연구에 전념한 계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에 회의를 가지고 향촌에 은거하여 '沈潛性理'하는 학문적 자세와 후진 교육활동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勳舊派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행된 사림의 이러한 노력은 향리 주도하의 향촌사회를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향촌사회는 장차 집권 훈구파에 대응되는 세력으로서의 사림을 배출하는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었다.3)

향촌사회에 은거하여 침잠성리하며 '修己' 지향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하더라도 사림은 성리학과의 접촉을 체험한 사대부란 母胎에서 파생된 존재로서 권력지향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 정치·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는 성리학의 이상 구현이 불가능한 만큼, 정계 진출에 전혀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다. 또한 '忠臣不事二君'의 명분도 왕조교체를 직접 체험한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도 결국 수기에만 만족할 수는 없었고 그 이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는 '治人'의 경지까지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동향과는 달리 조선왕조의 건국을 지지 내지 주도함으로써 공신가문 또는 舊來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훈구계열은 畿湖지방 특히 近畿 지역에 근거지를 두면서 정치권력과 경제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유교적 통치이념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의 官人으로서 성리학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마저 거부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들의 학문적관심이나 성과도 橫南지역 사림의 그것에 못지않았다. 이는 우선 조선 성리학의 연원을 제공한 鄭夢周의 문하에 吉再나 趙庸과 같은 영남 출신뿐만 아니라, 權近・權遇 형제와 같은 기호 출신의 인물들도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李穡이나 권근 등의 학문이 정몽주나 길재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牧隱集》과《圃隱集》에 나타난 그들의 학문적 관심이나 성과는 그 우열을 논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하며, 길재와 권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권근이 《入學圖說》에서 보여 준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수

<sup>3)</sup>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342~343쪽.

<sup>----, 《</sup>朝鮮時代 地方行政史》(民音社, 1989), 100~109\.

준에서는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며, 길재 자신도 정몽주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색에게서도 사사한 바 있었다. 이처럼 이색·권근 등 기호학파나 길재·조용 등 영남학파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날 후자가 성리학의 정통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권근·이색 등 기호계 사림은 새 왕조에 出仕하여 명분상 절의를 버렸고, 그 문하에 名官은 많았으나 名儒는 배출되지 못하여 학통을 계승할 문인을 얻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들의 가계가 그 뒤 계속 훈구가문의 주축을 이름으로써 재야사림으로 부터 상대세력으로 주목받은 결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리학의 학문적 전통은 있었으나, 그 맥락은 거의 단절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온 기호지방의 사림은 자연히 영남지방에 대해 깊은 학문적 관심을 지니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 두 지역 사림간의 접촉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의 접촉은 여러 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학문의 授受關係가 일반적이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남지방의성리학자 가운데서도 그 학통을 유지한 것은 길재→金叔滋→김종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불과하며, 후진 교육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김종직부터였다. 그는 세조 5년(1459) 2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래, 성종 23년(1492) 62세로 죽을 때까지 많은 문인들을 길러냈다. 그의 교육활동은 京職에 종사하던 세조 1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본격화한 것은 성종 원년부터였다.

김종직과 그의 문인인 金宏弼・鄭汝昌의 교육활동은 여러 갈래의 접촉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접촉계기는 친족 및 인척관계, 동향인 또는 거주지의 근접함, 지방관 재임시, 服喪廬墓時, 在京(從仕)時 등이었다. 이외에 김종직이 고시관으로서 擧子와 문인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었다. 그의 문인으로 파악되어 문인록에 등재된 인물 가운데 崔溥・權景裕・李繼孟・李胄・李黿등은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蔡壽・金詮・申用溉 등은 같은 경우인데도 문인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계기나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사제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의식이 매우 강인하였다. 그들간의 접촉은 대체로 김종직・김광필・정여창 등 師友가 매체가 되고 구심점이 되어 이루어졌지만,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던 경우에도 서로가 매개가 되어 접촉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간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당시 유일한 정치세력집단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오던 훈구파에 대해 견제 내지 압력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세력으로부터 그 상대성을 인정받게 될 만한 수준의집단이 된 것은 성종 15년 이후이다. 성종 8년 김종직은 善山府使로 있을때, 그를 방문한 몇몇 門人을 餞別하면서 쓴 詩에 註記한 가운데에서 '吾黨'4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오당'이라는 개념 속에 師友・문인이 느끼는 원초적인 공동체의식 같은 것이 엿보이고 있으나 이는 학문적인 차원의 것이아니었고 그들 가운데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은 아직 별로 없었다. 성종13년 김종직은 성종 원년부터 12년간에 걸친 咸陽군수・선산부사 등의 외직생활과 복상기간을 끝내고 京職에 복귀하였다. 이 때부터가 중앙정계에서의 그의 정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으며, 그 이전은 향촌교화 및후진교육 기간이었다.

김종직의 문인과 김광필·정여창 등의 사우 중에서 문과 급제자와 중앙정계 진출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성종 16년부터이다. 즉 성종 원년에서 동왕 15년까지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金訢·表沿沫·曹偉·兪好仁·金諶·楊熙止·金孟性·姜景敍·康伯珍·李義亨·姜謙·周允昌·최부·金驥孫 등 14명이었다. 이 수는 점차 늘어 성종 16년부터 연산군 4년(1498)까지는 朴漢柱·李宗準·권경유·洪瀚·權五福·姜渾·金馹孫·柳順汀·이주·李守恭·이원·이계맹·方有寧·孫仲敬·任由謙·정여창·趙廣臨·김광필·鄭承祖·安觀·南袞·李穆·鄭希良·康仲珍·李鐵均·任熙載·許磐·趙有亨 등 28명에달하였다.

요컨대 嶺南士林間, 畿湖士林間, 더 나아가서는 영남·기호사림간의 접촉이 진전됨에 따라 원래의 '林下儒賢'이란 비조직적인 사림은 '吾黨'의 단계를 거쳐 '慶尙先輩黨'의 수준으로, 거기에서 다시 영남·기호를 묶는 '사림파'로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곧 영남사림과 기호사림이 각기 지닌 현실적 조건과 기반의 한계가 양자의 相補에 의해 극복되면서 사림파로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sup>4)</sup> 金宗直,《佔畢齋文集》年譜, 成化 13년 정유.

이 시기 사람파는 김종직의 문인이 주축이 되고 김광필·정여창의 사우·문인이 그에 첨가된 것이었다.5) 이들의 문집과《東儒師友錄》에 따르면, 김종 직의 문인은 65인, 김광필의 사우·문인은 41인, 정여창의 사우·문인은 47인으로 각각 집계된다. 이들 사이에 중복된 인물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5인으로 집계된다. 이들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鉅族이 21인(23%)이고, 非鉅族이 55인(60%)에 달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볼 때 사람파에 속한 인물들은 재지사족출신들로서 훈구가문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일반적인 이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1급거족 출신 13인(14%) 가운데는 11인이 기호지방 출신으로서 그들이 지닌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거부하고 사람과로 전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취향이나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와 같은 매우 가변적인 하나의 요인이 다른 몇 가지의 고정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그 전향을 가능케 한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에 성립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과는 비거족계 재지사족 출신이 주축이 되고 소수의 훈구계가문 출신이 전향하여 가담한 세력이었다.

이 시기 사림파의 거주지는 영남지방출신이 49%를 웃도는 50인으로 집계되며, 나머지 타도 출신이 51%에 가까운 51인으로 집계된다. 그 중에서도 기호지방출신이 47%를 넘는 48인으로서 영남지방세에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이었고, 특히 김굉필의 문인에 있어서는 기호계가 훨씬 우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종대의 사림파가 거의 영남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처럼이해되어 오던 통념이 시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사림파는 經學, 특히 성리학의 탐구에 주력하는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이며, 그것도 그들의 입지가 확고하게 다져진 뒷날의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건국 후 1세기는 성리학 자체의 깊이를 천착 하기보다는 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준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朱子家禮》의 보급과 같은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 림파의 영수로 추앙받던 김종직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음을 보 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經術과 詞章을 초목의 根枝와 柯葉으로 비유하여

<sup>5)</sup> 사림파의 성분에 대해서는 李秉烋, 앞의 책, 23~34쪽 참조.

그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는데,6) 이것이 곧 그의 학문이 지닌 과도기적인 양면성이었다. 그의 학문적 성향이 지닌 양면성은 그의 문인대에 와서는 사장을 추구하는 부류와 경학, 즉 성리학을 탐구하는 부류의 두 갈래로 분기, 계승되었다. 성리학에 주력한 인물로는 김광필·정여창·유호인·박한주 등이손꼽히며, 사장·政事·節義·孝行 등으로 이름 난 인물로는 南孝溫·洪裕孫·茂豊副正 摠·김일손·조위·이철균·이종준·이목·이주·권오복·이수공·이원·이계맹·권경유·강겸·홍한·표연말·김혼·유순정·강경서·최부·정희량·안구·임희재·강백진 등이 손꼽힌다. 사장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은 학문이나 교육활동을 통해 문인을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저작은 중종대에 증보된《續東文選》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자취를 남겼다. 반면《소학》의 實踐躬行에 충실한 김광필·정여창 등은 상당수의 문인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김광필의 학문은 조광조에게 연결되면서 조선왕조 성리학의 정통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의 현실대응의식은 그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 적극적인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김종직은 훈구파가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현실에 적응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굳혀가기 위해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는 현실개혁적이기보다는 오히려 現實自足的이고 現實安住的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는 그가 성종 15년(1484) 이조참판이 되어 "冗官을 汰去하고 賢良을 薦用하자"기고 주장한 바 있었다고는 하나, 문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천거로 진출한 사람파 인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은 데서도 확인된다.

이같은 그의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는 학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문하도 두 갈래로 갈리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하나는 보수적·고답적이 며 소극적인 성향을 띠면서 '修己'를 지향하는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治人'傾斜의 계열이었다. 이는 학문적인 성향과도 연 관을 지녀서, 전자는 김광필 등과 같은 '爲學'지향의 인물에게서 발견되며, 후자는 김일손·남효온 등 사장 지향의 인물에게서 찾아진다. 성종·연산군

<sup>6)</sup> 金宗直,《佔畢齋文集》 권 1, 尹先生祥詩集序.

<sup>7)</sup> 金宗直,《佔畢齋文集》年譜, 成化 20년 갑진.

초의 사림파가 지닌 학문,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의 두 가지 성향은 중종대의 조광조에게서 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小學童子'를 자칭한 김굉필에게서 '爲己踐履之學'을 수업한 그는 학문면에서 《소학》의 실천궁행을 강조하면서 '치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8) 현실대응자세에서도 흔히 급진적이라고 평가될 만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 2) 훈구세력과의 갈등

조선 초기, 곧 건국에서 성종 중엽까지의 정치권력은 역대의 공신을 주축으로 한 훈척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開國·定社·佐命 등 국초의 3공신》이 책봉되면서 공신 자신이나 그 후손들은 관직과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 권력과 부는 후대로 가면서 더욱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에 더욱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세조의 집권과 즉위라는 정치적 격변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조의 篡位를 도와 공신이 되어 정치적실권을 장악한 집권정치세력은 훈구파로 불려졌다. 이들은 세조의 집권과 즉위에 수반된 논공행상과정에서 권력과 부의 확대를 가속화하였다. 단종 원년(1453)의 靖難功臣과 세조 원년(1455)의 佐翼功臣이 된 훈구계열은 功臣田을 분급받았고, 이후 의정부 대신과 이조·병조판서 등 요직을 독점하여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세조 때의 강화된 왕권하에서 지지세력에게 베풀어진 지위의 보장은 잠재적으로 진행되어 온 집권 훈구계열의 權貴化 추세를 촉진하여 그 지위가 가문별로 세습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두 공신이 대개 兼帶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외 집단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李施愛亂 평정 후의 敵愾功臣 책봉이었다. 이시애란 이후 훈구대신들은 南怡 등 신진세력에 의해 일시 정치적 실권이 약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남이가 韓明澮・盧思愼・金國光 등 훈구대신들의 제거를 모의한다는 柳

<sup>8)</sup> 趙光祖,《靜庵集》附錄 6, 行狀(洪仁祐撰).

<sup>9)</sup> 鄭杜熙,《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一潮閣, 1983). 朴天植,《朝鮮建國功臣의 研究》(全北大 博士學位論文, 1985).

子光의 고변으로 발단이 된 '南怡獄事'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 지위를 만회하였다. 그 결과 훈구세력은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하였고, 翊」 戴功臣에 책봉되면서 정치적 위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왕권이 위축된 가운데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하여 세조비의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자, 견제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훈구대신들의 정치권력 독점현상은 심화되어 갔다.

성종 즉위 이후 책봉된 佐理功臣100은 그 수에 있어서도 전례없는 수준이었지만, 그 다수가 세조대의 공신들로 채워져 있었던 사실에서 이는 훈구세력의 독점적 권력장악을 확고히 해 준 최종적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 좌리공신에는 형제·부자·숙질 등 친척·姻姫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다수였고, 이미 두 차례의 공신을 겸대한 인물도 포함되고 있었다는 사실이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좌리공신은 세조 때의 공신이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세력이 없는 정치세력인 훈구파로서 그역사적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세조 말년에 그의 건강악화로 생긴 일시적 공백을 메우려고 고안된 院相制를 강화하였다.11) 時・原任大臣으로 구성된 원상제는 署事制 아래의 의정부에 承政院이 더해진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이었다. 성종이 親政하게 되는 동왕 7년(1476) 5월까지 승정원에서는 정사를 처리하고 경연의 領事로서 2員씩 번갈아 참석하여 고문에 응했으며, 國政諸事에 대한 收議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성종도매사를 원상인 한명회・鄭麟趾・申叔舟・鄭昌孫・洪允成 등 세조대 이래의핵심적 훈구대신들의 자문을 받아 처결하였다. 그리고 원상제 실시 이래 있었던 두 차례의 錄勳도 원상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요컨대 원상제는 세조 공신세력의 권귀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왕권을 제약하여 훈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장치로 기능한 면이 컸던 것이다.

<sup>10)</sup> 全宗燮,〈朝鮮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그 性分과 動向을 中心으로-〉 (《大丘史學》18, 1980).

鄭杜熙, 위의 책, 241~257쪽.

李秉烋, 앞의 책, 14~41쪽.

<sup>11)</sup> 金甲周, 〈院相制의 成立과 機能〉(《東國史學》12, 1973).

또한 그들은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혈연적 관계를 설정하여 대응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코자 하였다. 韓確은 성종의 생부인 덕종과, 한명회는 예종·성종과, 韓伯倫은 예종과, 尹蠔는 성종과 각각 國婚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종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도전받지 않는 독존적 집권세력으로 건재하였으며, 훈구세력 주도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의 마련, 시혜적 문화사업 실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해갔다. 《東國輿地勝覽》에 '人物條'를 두어 그들의 선조를 대거 등재함으로써 '名族意識'을 과시한 사실12)에서도 조선 초기의 권력구조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왕조 개창 후 약 1세기 만인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관료사회에는 특별한지위를 지닌 특권적 부류가 양산되었으며, 科田과 공신전을 통해 경제기반까지 확고히 다진 이들 세습적 관료집단이 정국을 주도하는 형세로 변화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체제는 훈구파의 권귀화와 戚臣系의 새로운 등장에따라 그 한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권귀화・보수화가 심화되면서변칙적인 관료제 운영을 통해 권력은 훈구파 계열의 중앙 權臣들에게 집중되는 형세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방에대한 경제적 私利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京在所・守令・留鄉所 등으로연결된 비리의 구조적 기반이 형성・고착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기능이 취약해져 갔기 때문이다.13)

훈구파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모순과 비리가 고조되어가고 있을 때,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고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가던 사람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사람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성종 중기 이전에는 김종직을 비롯한 金孟性·曹偉·金訢·楊熙止 등 몇몇 인물의 진출이 눈에 띌 뿐, 중앙정부의 모든 권력기구는 훈구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sup>12)</sup> 李泰鎭、〈15世紀 後半期의「鉅族」과 名族意識ー《東國興地勝覽》人物條의 分析 을 통하여-〉(《韓國史論》3、서울大、1976).

<sup>13)</sup> 李泰鎭,〈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上·下)〉(《震檀學報》34·35, 1972·1973).

政曹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 · 견제하는 대간 등 언관계통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양상은 성종 중기를 고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성종의 문치가 궤도에 오르고, 김종직이 경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그의 문인들도 연령상 혹은 학문적으로 점차 성장하여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 늘어나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다소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종래 소수의 인물이 홍문관에 포진하고 있었던 데 불과했던 사림파는 대간직에도 서서히 진출하 여 언관에 골고루 분포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성종 15년(1484)부터 연 산군 4년(1498)까지 대간에 진출한 사림파를 보면, 김심・李仁亨・이수공・박 한주 · 이계맹 · 표연말 · 홋한 · 김일손 · 이주 · 임유겸 · 강경서 · 최부 · 남곤 · 손중돈·유순정·강백진·강겸·양희지·이종준·유호인·김굉필 등이 있었 다. 같은 기간에 홍문관에는 김흔·조위·이인형·유호인·최부·강경서·김심 · 권오복 · 김일손 · 이원 · 표연말 · 강겸 · 홍한 · 임유겸 · 남곤 · 이수공 등이 진 출해 있었다.14) 이를 통해 볼 때, 사림파는 정조나 승정원 등의 관직보다는 언관직에 집중적으로 진출했으며. 언관직 가운데서도 홍문관에 보다 많이 진 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숫적인 열세의 극복이나 정조 계통 고 위직에의 진출 부진 등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림파 세력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며, 훈구세력 견제를 겨냥한 그들의 언론 활동을 어느 정도나마 가능케 하였다.

사림파의 언관직 진출에 의한 훈구파의 견제는 弘文館의 언관화15)와 새로운 언론 관행의 수립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성종 초반부터 사림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양사는 정치구조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취약하여 사림파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 9년 3월 예문관에 參外官 4員을 둠으로써 홍문관으로 분립되고, 그 기능도 점차 文翰과 顧問에서 언관화되어

<sup>14)</sup> 이들은 모두 김종직의 문인 또는 김굉필·정여창의 師友·문인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림파답게 처신하지 않음으로써 사림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인물 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sup>15)</sup> 崔承熙, 〈弘文館의 성립경위〉(《韓國史研究》 5, 1970).

<sup>——, 〈</sup>弘文錄考〉(《大丘史學》15·16, 1978).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一潮閣, 1994).

가자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弘文錄의 선발과정을 통해 사림 파의 언관직 진출이 보다 유리해졌다. 홍문관원 후보자 명단인 홍문록의 선발은 먼저 참하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후 그 명단이 吏曹郎官을 거쳐 의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의정부 대신들의 관여를 거쳐야 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이는 대간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홍문록은 半自代的인 인선을 통해서 왕이나 대신들의 자의적인 인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것이며, 사림은 이를 통해 어관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홍문록의 성립으로 인선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 홍문관원은 경연에 나아가 언론을 행사하였고,16) 성종 19년(1488) 무렵에는 국왕의 지지하에 言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정되어 언관화하였다. 홍문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간의 언사를 규찰할 수 있는 대간 탄핵권을 확보하였고, 홍문관원들이 양사의 언관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대간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언론 3사는 강력한 언사를 행할 수 있었고, 훈구재상들의 비리를 들추기시작하면서 이들과 격렬한 마찰을 빚게 되었다.

홍문관의 언관화와 더불어 언론 관행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17) 성종 4년에 이르러 先發議者를 推聞・處罰치 않도록 하는 관행이 성립되면서 대간의 의사결정 장치인 圓議의 독자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院相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원의의 결과임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언론 방도인 箚子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간원 正言과 사헌부 監察의 職次도 대간의 언론기능이 감찰기능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언론을 맡은 정언이우위에 두어졌다. 그리고 성종 8년부터 국왕은 '不問言根'하게 하여 기왕에'風聞擧劾'의 금지로 제한되어 왔던 대간의 언론소재・대상의 제약을 해소시켰다. 이는 대간이 사림의 풍문을 자유로이 언론의 소재로 택하여 원의를 거쳐 언론활동을 펼 수 있게 한 것으로, 대간언론과 公論과의 공유부분이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림과가 언론계통을 장악하는 성종 말경에는 원의가 독자성을 확보한 위에 사림과의 언론 빈도가 급격히 증가

<sup>16)</sup> 權延雄, 〈成宗朝의 經筵〉(《韓國文化의 諸問題》, 時事英語社, 1981).

<sup>17)</sup> 南智大, 〈朝鮮 成宗代의 臺諫言論〉(《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하여 대간언론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내실화의 정도도 높아지 게 되었다.

사림파는 언관계통 이외에도 史官職과 銓郞職으로 진출하였다. 사관직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천거하는 翰薦法을 이용하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대간의 직접적인 언론활동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간접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관을 거친 뒤에는 그 정치적 성장 속도가 빨랐다. 18) 그래서 사관직은 사림진출의 주요 통로가 되었으며, 재야사림이 정계에 진출하여 사림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후일 土禍에서 해를 입은 핵심 사림파 가운데 사관 출신자를 살펴보면, 진출시기가 서로 연결·집중되어 있는 점이나, 戊午土禍 피화자 27명 가운데 12명이 사관 출신이고 이들에 대한 형량이 다른 피화자보다 컸던 사실, 그리고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성종 15년부터 연산군 4년(1498)까지 전체 사관 42명 가운데 23명이 사림파였던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사림파는 전랑직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하였다.19) 이는 무오사화를 일으킨 李克墩이 이조판서로서 전임 전랑이 후임으로 천거한 金馹孫을 거부하여 알 력이 생겼던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그들은 전랑직에 그다지 많이 진출하지 못하여 큰 의미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훈구파 지배하의 사림파 언관을 중심으로 한 구제도의 개혁과 현실개조의 주창은 곧 앞으로 사림파와 훈구파와의 갈등과 충돌이 전개될 조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 갈등의 조짐은 朱溪副正 深源의 상소와 그에 따른 대응에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柳子光과 任元濬・任士洪 부자의 탄핵에 이르러 더욱 증폭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南孝溫의 昭陵復位 상소와 李穆의 尹弼商 탄핵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시기 사림파의 훈구파 탄핵은 우선 戚里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한명회·임원준·임사홍·尹驝·任光載)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탄핵대상이 相位 또는 척리임을 기화로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윤 필상·尹殷老), 인척관계를 기화로 관직에 濫陞된 인물(閔永肩·朴元宗), 공신으

<sup>18)</sup> 車長燮, 〈史官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 士林派〉(《慶北史學》8, 1985).

<sup>19)</sup> 金宇基,〈朝鮮前期 土林의 銓郎職 進出과 그 役割〉(《大丘史學》29, 1986).

로서 불법·비리를 저질렀거나 청렴치 못한 인물(申蕭·梁誠之·李鐵堅·金國光), 相位에 있으면서 왕의 뜻을 逢迎한 경우(李克培·盧思愼·洪應), 非土族·非文臣 당상관(유자광·嚴用善·宋欽·權瓚·魚有沼·李季仝)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도 파악된다.

다만 성종대 사림파의 언론활동은 훈구파 세력에 대응될 만큼 높이 평가 될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사림파가 성취한 유향소의 복립도 오로지 그 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향촌지배에 대한 중앙정부 및 훈구파의 이해 관계의 부분적인 합치의 소산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언론 행사가 가능했던 것도 사림파의 결속된 힘에 의한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문치지향적인 성종 자신의 의지와 관용이 첨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종은 세조 때 예문관 내의 겸예문관직에 의해 그 기능의 일부 가 유지되어 오던 집현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즉위초 예문관 내에 집현 전직제를 轟置하였다가. 9년(1478)에 명실상부한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또 세조 때 停罷되었던 경연을 강화하는 등 문운을 발흥코자 하 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언론활동이나 학문활동도 권장되기 마련이었다. 성종이 사림파 인물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총애한 사실이나, 그들의 급진적인 언론에 대해 언로 폐쇄의 불가함을 내세워 중재하고 변호한 사실은 모두 그 러한 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훈구파 일변도의 현체제를 지양하고 상호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의 도에서 훈구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응세력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했 던 것이다.

#### 3) 무오사화

성종대에는 정치문제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거나, 비록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건의로 용납되었던 사림파의 언론내용이 연산군대에 와서는 그 보호막이 소멸되면서 정치문제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유자광·이극돈·윤필상 등이 주도한 戊午士嗣20)는 사림파언관의 도전에 대한 훈구파와 政曹系 老成大臣의 대응조치였으며, 훈구파가

사림파 탄압의 빌미를 김일손의 史草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이후 세 차례 더일어난 사화와 구별하여 '史禍'라고도 한다. 무오사화의 발생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김종직의 〈弔義帝文〉을 김일손이 사초로 작성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은 복잡하였다.<sup>21)</sup>

무오사화는 연산군 4년(1498) 7월에 《成宗實錄》을 撰修하기 위해 史局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이극돈은 일찍이 자신과 사이가 좋 지 않던 김일손이 史官으로 재직하면서 사초에 자신의 비행을 기록했음을 알고. 그에게 이 사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초에 기록된 이극돈의 비행은 세조 때에 불경을 외고. 전라도관찰사 재임시에 貞 熹王后喪을 당하였음에도 長興 官妓와 더불어 주연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었 다. 그런데 그는 이를 김일손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근 거로 '丙午年(1486)'에 자신이 고시관으로 있으면서 좌중의 모든 관리들이 김 일손의 試卷을 '能作'으로 일등에 두고자 했으나 科場製述의 程式에 맞지 않 는다고 하여 끝내 이등에 둔 점을 들었다. 또 이조판서로 재임 중 이조ㆍ병 조낭청이 모두 김일손을 여러 차례 낭청으로 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손 의 인물됨이 좋지 않다 하여 備望하지 않았던 점, 그의 비행을 기록한 사초 를 김일손이 封해서 탄로나게 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감정 차원의 문제일 뿐, 근본적으로는 앞서 논급한 것처럼 사림파가 세조대 이래 정치·사회·경제적 제특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파를 견제하려던 데 서 빚어진 것이었다. 이 점은 이후 김종직이 南怡獄事를 일으켰던 유자광을 미워하여 유자광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누각현판에 걸어 두었던 시를 자신 이 후에 함양군수로 내려와서 철거해 불태워 버렸으며,22) 이러한 양자의 평 소 감정대립이 무오사화의 전개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했다 는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sup>20)</sup> 姜周鎭,《李朝黨爭史研究》(서울大 出版部, 1971). 洪淳昶,〈士禍와 黨爭과의 關係〉(《大丘史學》 7·8, 1973). 申解淳,〈官僚間의 對立〉(《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sup>21)</sup> 이하 무오사화의 전말에 관해서는 《燕山君日記》 권 30, 연산군 4년 7월조에 의 거하였다.

<sup>22)</sup> 李肯翊,《燃藜室記述》 권 6, 燕山朝故事本末 戊午士禍.

김일손의 사초로 인해 비행이 드러나게 된 이극돈은 사초의 改作이 어렵 다는 것을 알고, 당상인 尹孝孫과 함께 이 사초를 배당받은 成重淹에게 김일 손의 사초는 '逐日記事'하지 않아 어느 날짜에도 넣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싣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사실을 실록찬수에 참가하고 있던 사림파 李 穆이 알고 성중엄에게 만약 김일손의 사초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실 록에 기록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김일손에게 이를 알렸다. 이극돈의 비행 을 기록한 김일손의 사초를 둘러싸고 이극돈측과 김일손측의 갈등이 깊어지 면서. 이극돈은 사초를 실록에 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또 다른 내용을 문제삼기에 이르렀다. 곧 김일손이 세조대의 宮 禁秘事를 사초화했음을 들추어 내어 魚世謙・韓致亨・盧思愼・尹弼商 등 훈 구대신들과 논의하여 사초를 국왕이 열람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세조 당시에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 았던 김일손이 어떻게 그 당시의 궁중비사를 기록했는지를 밝히려 한다는 구실을 붙였다. 연산군은 사초 전체를 封入하도록 했으나 이극돈 등은 군주 는 사초를 볼 수 없으나 宗社에 관계된다면 관련된 부분만 취할 수 있다고 하여 김일손의 사초 6조만을 봉입하였다. 이후 사건이 확대되면서 연산군은 사초 전체를 봉입하도록 했다.

김일손은 붙잡혀 오면서 이미 이극돈의 비행을 기록한 사초 때문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鞫問을 받는 과정에서 주로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여 세조 및 집권공신들의 비행을 기록한 점과 이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반대측 인물들을 推獎한 내용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궁중의 비사로는 세조가 덕종의 후궁인 權貴人을 불렀으나 권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 덕종의 昭訓尹氏事, 승려 學祖가 內旨로서 해인사 주지를 자신의 眷屬으로 바꾼 사실, 永膺大君夫人 宋氏가 窘長寺의 法會에 갔다가 侍婢가 잠든 후에 學祖와 사사로이 통한 사실, 학조가 廣平大君・영응대군의 田民을 많이 획득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되었다.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고 반대자를 추장한 내용으로는 昭陵追復事, 後殿曲을 기록한 점, 皇甫仁과 金宗瑞의 죽음을 死節로 기록한 점, 昭陵梓宮을 海濱에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기록한 점, 趙文琡・李暟・崔叔孫이 서로 대화한 내용, 朴彭年事, 金淡이 河

緯地 집에 가서 위험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 점, 李尹仁이 박팽년과 나눈 대화, 세조가 박팽년의 재주를 아껴 살리고자 신숙주를 보내어 권유했 으나 따르지 않고 죽음에 나아간 사실, 坦禪이 癸酉靖難 때 光陽에 付處되었 다가 絞死당한 鄭苯의 시신을 호송했음을 기록한 사실, 남효온과 진사 權綽 의 죽음을 卒로 기록한 점, 魯山君(단종)의 후궁인 淑儀 권씨의 노비와 田山 을 權擥이 취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추궁에 대해 김일손은 황보인·김종서·정분 등은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帝王이 마땅히 추장해야 하므로 정분을 鄭夢問에 비유하고, 황보인과 김종서를 死節로 기록했으며, 세조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므로 許磐·崔 孟漢 등에게서 들은 바를 거리낌없이 기록했다고 하여 세조의 집권을 부당하게 여기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일손의 국문에 적극적이던 유자광은 사초에 실린 또 다른 내용인〈弔義帝文〉을 발견하고 사건을 더욱 확대하였다. 김일손은 사초에서 노산군의 시신이 숲속에 버려져 거두는 자가 없어서 까마귀 밥이 되었는데, 한 동자가밤에 시신을 업고 달아나서 水火에 던져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기록하였으며,이어서 김종직이 지은〈조의제문〉은 忠憤이 깃들어 있다고 논평한 바 있었다.〈조의제문〉은 외견상 秦末 項羽가 초나라의 義帝를 죽인 사실을 두고 의제를 조문하여 지은 제문이나, 실은 의제를 단종에, 항우를 세조에 빗대어그의 집권을 반인륜적인 것으로 은유한 것이었다. 훈구대신들은 이전의 供草과정에서 드러난 세조대의 비행 기록만으로도 사림파가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고 있음을 짐작하였지만,〈조의제문〉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받아들였다.〈조의제문〉은 김종직의 제자들 사이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있어서의제가 단종을 은유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김일손 이외에 사관으로 있던 權五福과 權景裕도 사초에다 이를 기록하였다.

〈조의제문〉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연루자의 범위는 김종직의 문인 전체로 확대되었고, 훈구파는 김종직의 문집 속에 있는 또 다른 방증기록을 찾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집에서 陶淵明의 述酒에 화답한 시의 서문을 찾아내어 문제로 삼았다. 그 서문은 湯이 아니었다면 劉裕의 篡弑罪와 도연명의 忠憤의 志가 숨겨질 뻔했다고 하면서, 春秋筆法에 비유할 것이라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윤필상 등은 이는 〈조의제문〉보다 더 심한 것으로 유유를 세조에 비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훈구파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李穆·任熙載·李黿·表沿沫·洪瀚·朱溪副正 深源 등 사람과 인물들을 차례로 국문하였다. 임희재와 이목은 이극돈의 아들 世銓을 길에서 모욕한 바 있었으며, 이원은 김종직의 諡狀에서 그를 칭송하였고, 표연말은 김종직의 행장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초에 소릉을 훼철함은 문종에게 어긋난 도리라고 기록했고, 홍한은 사초에 정창손이 스스로 신하로서 섬겼던 노산군을 '首唱請誅'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으며, 이심원은 성종대에 세조의 舊臣을 등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 모두 훈구파의 공격에 앞장선 인물들이었다.

이와 같은 추국과정을 통해 이미 죽은 김종직은 剖棺斬屍되었고, 그의 문 인들 대부분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윤필상 등은 그들의 죄명과 형량을 다음 과 같이 議啓하였다.

金駅孫・權五福・權景裕: 大逆 → 凌遲處死 李穆・許磐・姜謙: 亂言切害 → 斬・籍沒

表沿沫·鄭汝昌·洪瀚·茂豊副正 摠: 亂言 —— 決杖 100, 流 3,000里, 烽燧 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知亂言不告 —— 軍庭爐于定役

李宗準・崔溥・李黿・康伯珍・李胄・金宏弼・朴漢柱・任熙載・李繼孟・姜渾 : 朋黨 → 決杖 80, 遠方付處

이와 같은 의계에 대해 유배부처인을 15일 거리 밖으로 쫓아버리라는 연 산군의 명이 내려지자, 윤필상 등은 다시 다음과 같이 각자의 유배지를 의계 하여 윤허받았다.

강겸-江界, 정희량-義州, 박한주-碧潼, 표연말-慶源, 홍한-慶興, 최부-端川, 정여창-鍾城, 임희재-鍾城, 이주-珍島, 강경서-會寧, 무풍부정 총-穩城, 김굉필-熈川, 이수공-昌城, 이종준-富寧, 이원-宣川

이 가운데 강겸은 원래 허반으로부터 세조대의 궁중비사를 듣고 김일손에게 옮긴 죄목으로 처참케 되어 있었으나 감형을 받았다. 실록청당상인 이극돈・柳洵 및 6방당상도 파직되었으나, 무오사화를 주도한 훈구대신들은 사건처리 후에 정치적 실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상도 받았다. 윤필상・노사신・한치형 등은 추관당상으로 伴倘 10인과 奴・婢 각13口, 丘史 7인, 田 100결, 表裡 1단, 內廐馬 1필, 罪人家舍 1坐, 부모 작위 등을 하사받았고, 유자광은 반당 8인, 노・비 각 10구, 구사 5인, 전 80결, 표리 1단, 내구마 1필, 加 1급, 죄인가사 1좌, 부모 작위 등을 하사받았다.

성장일로에 있던 사림파가 이처럼 쉽사리 무너져버린 것은 훈구파와의 갈등과정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언관계통 또는 한직에 묶여 버렸고, 그들 가운데 간혹 정조 계통에 진출한 예가 있었다 하여도 하위직이었으며, 정책결정과 그 실행을 주도하는 정조의 상위직은 훈구파가 독점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의 사림파가 수행한 역사적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잘 대변해 준다.

# 4) 갑자사화

무오사화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연산군 10년(1504) 4월에 또 한 차례의 대옥사가 일어났는데, 이 해가 갑자년이어서 이를 甲子士禍라 한다. 이 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尹妃가 폐위·사사된 사실이 연산군에게 전해진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궁중과 결탁한 朝臣과 府中의 조신이 서로 갈등을 빚은 데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산군은 자신의 무절제한 처신을 비판·견제하던 사림파를 제거한 후 한 층 더 무도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리하여 국가의 재정이 곤궁하게 되자, 백성들에게 貢物의 수량을 늘려 부과하는 한편 공신들에게 지급되었던 賜田과 노비 등을 몰수하려고도 하였다. 대부분이 공신인 훈구파는 이에 반대하는 한편 궁중의 支用을 절약할 것을 청하였고, 나아가서는 왕의 무절제한 생활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측근의 일부 조신들은 궁중과결탁하여 왕의 방종을 충동하였다. 이로 인해 조신들은 宮中派와 府中派로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sup>23)</sup>

<sup>23)</sup> 甲子士禍의 전말은 申解淳, 앞의 글, 174~176쪽 참조.

궁중과 인연이 있던 임사홍24)은 이 기회를 이용, 연산군비 愼氏의 오빠인 愼守勤과 결탁하여 조정의 훈구파뿐 아니라, 무오사화로 세력이 꺾인 사림파의 잔존세력까지도 모두 거세하려고 하였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 임사홍은 연산군 생모의 폐비·사사사건을 연산군에게 몰래 고하였던 것이다. 연산군의 생모 윤비의 폐위·사사사건은 성종 11년(1480)에 윤비가 투기죄를 이유로 폐비되었다가 얼마 뒤에 사사된 사건을 말한다. 그 당시 연산군은 4세의유년시절이었기 때문에 장성하기까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즉위 후 10년 4월에 임사홍의 밀고로 비로소 자기 생모가 성종의 후궁 嚴・鄭 兩淑儀의 참소에 의해 폐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두숙의를 內庭에서 撲殺하고 그들이 낳은 왕자 安陽君 桁과 鳳安君 熢을 죽였다. 나아가 자신의 이러한 폭행을 책망한 祖母 仁粹大妃를 머리로 받아 얼마후에 죽게 하는 패륜행위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한편 연산군은 생모 윤씨를 왕후로 추숭하고 성종묘에 配祀코자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신들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다만 應教權達手와 李荇만이 이에 반대하였다가 권달수는 사형당하고 이행은 유배당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모 윤비의 폐출·사사 당시의 관련 조신들을 모두 追罪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이 이 상황에까지 확대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궁중파와 부중파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궁중파인 임사홍 등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연산군을 책동한 데 있었던 것이다.

임사홍은 이 기회를 통해 무오사화 때 화를 면한 사림파의 잔존 세력까지도 일소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사림파의 종장인 김종직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림파가 앞으로 자신들의 弄權에 방해가 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일파는 사림파가 國事를 비방한다고 무고하여 윤비폐출·사사사건의 연루자들과 함께 치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무오사화 때 '遠方付處'에 처해졌던 박한주・이수공・강백진・무 풍부정 총・최부・이원・김굉필・이주・강겸 등은 사형되고, 그 형제 및 아

<sup>24)</sup> 임사홍은 성종에 의하여 '亂政之人'으로 지목받아 중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任光載는 예종의 부마였으며, 任崇載는 성종의 부마였다.

들은 決杖, 外方黜送되었다. 그리고 정여창·조위는 무오사화 때 杖流되었다가 그 사이에 죽었지만 다시 추죄되었으며, 남효온은 소릉복위 상소건으로 추죄되는 등 사림파는 일대 타격을 입었다.<sup>25)</sup> 동시에 훈구파도 윤필상·成俊·李世佐 등이 사형을 당하였으며, 이미 사망한 韓致亨·韓明澮·鄭昌孫·魚世謙·沈澮·李坡 등이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고 아울러 그들의 자제와 동족까지도 벌을 받게 되었다.

무오사화가 기성세력인 훈구파와 신진세력인 사림파의 대립·갈등의 소산이었다고 한다면, 이 갑자사화는 궁정 중심의 관료세력과 신진사림을 포함한 정부 중심의 관료세력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있다. 이로 인하여 사림파 세력은 중앙 정계에서 거의 도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림파는 잠재적인 성장을 지속해갔다.

한편 갑자사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훈구파 대신을 포함한 보수적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피화하면서 그들 자신이나 자손 중에서 학문적 성향이나 교우관계, 그리고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에 큰 변화를 일으킨 예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이다. 鄭光弼・李長坤・李繼孟・李思鈞・洪彦弼・趙元紀 등은 스스로가 被謫 또는 수난당한 바 있었으며,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부・조 혹은 至親에 연좌되어 피적, 不遇를 체험한 훈구계열의 인물도 매우 많았다.<sup>26)</sup>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문적 성향 및 현실대응의식과 자세면에서 훈구파로부터 사림파로 전향하였다. 또 사림파로 전향하지는 않았지만 사림파의 진출에 협력한 인물, 그리고 보수적이기는 하나 사림파의 정치적 처지나 그들의 이념・이상을 어느 정도 이해한 인물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중종대에 조광조와 같은 사림파의 영수가 진출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언관에 자리잡은 수많은 인물들의 진출을 가능케 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사림파의 세력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sup>25)</sup> 李秉烋, 앞의 책, 49쪽.

<sup>26)</sup> 李秉烋, 위의 책, 104쪽.

## 5) 기묘사화

연산군은 무오·갑자사화를 통해 자신의 실정을 견제하던 사림파와 부중파의 관료들을 제거한 후, 한층 강도높은 秕政을 펴게 되었다. 27)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연산군의 실정과 비행을 直言極諫하는 조신은 거의 존재하지않았다. 그의 폭정은 백성들에게도 미쳐 그들의 원성 또한 극도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훈구대신들은 왕의 폐립을 도모하게 되었다. 연산군 12년(1506) 朴元宗·成希顏·柳順汀 등은 왕을 폐출하고 晉城大君을 옹립하였다. 이것이 곧「中宗反正」이다. 중종반정은 117명에 달하는 靖國功臣을 배출하였는데, 특히 그 주도자인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 소위 3공신의 위치는 거의 절 대적이었다. 따라서 중종 초기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sup>28)</sup>

먼저 의정부는 박원종·유순정·성희안·柳洵·金壽童·宋軼 등의 공신이 중종 8년(1513)까지 이끌어갔다. 비록 2·3등 공신으로 책록된 유순·김수동·송질 등이 의정부 구성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반정계획 당초부터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편승한 데 불과했으므로 실제로는 3공신 중심체제가 되기 마련이었다. 다만 이러한 체제도 중종 5년 4월에 박원종이 죽고, 이어 동왕 7년 12월에 유순정까지 죽자 서서히 약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동왕 11년부터는 송질·유순마저 의정에서 물러나면서 공신주도체제는 해체되고 비공신 훈구계열이 의정부를 구성하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六曹에 있어서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즉 공신세력은 중종 2

<sup>27)</sup> 연산군은 자신의 실정에 대한 문신들의 直諫을 기피하여 經筵을 혁파하였고, 성균관을 宴樂의 장소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行獵을 위하여 한성부 주변 30리 이내의 민가를 철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도·각 읍에서 미녀와 관기들 을 뽑아 오게 하여 이를 運平・興淸이라 불렀는데, 그 수가 1,000명에 달하였 다. 또한 궁녀의 수도 막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칭호도 130여 종류에 달하였 다. 이 밖에도 鷹・犬을 뽑는 採鷹犬使를 8도에 나누어 파견하고, 準坊・瑞蔥臺 를 두어 진기한 동물들을 기르기도 하였다(申解淳, 앞의 글, 177~178쪽).

<sup>28)</sup> 이하 중종초의 권력구조에 대한 서술은 李秉烋, 앞의 책, 52~79쪽 참조.

년까지는 그 구성면에서 우세하였으나 3년 이후부터는 숫적 열세를 보이게 되었다. 공신세력은 이러한 숫적 열세를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였다. 당시의 인사권은 吏曹보다는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병권은 兼兵曹判書制를 이용하여 공신이 계속 장악하고 있었다. 요컨대 6조도 공신주도체제를 유지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중종 6년을 전기로 하여 겸병조판서제가 폐지되고 專任 병조판서가 임명되면서 6조에서의 공신의 영향력은 다소 쇠퇴해 갔고 서서히 비공신계 훈구세력의 우세현상이 나타나게되었다.

政曹에서의 공신우위체제와는 달리 三司 등의 언관계통은 주로 비공신계 훈구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반정이 원래 소수인의 擧事로 성취되었으며, 논공행상과정에서 반정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물을 친·인척 또는 朋舊・賄賂를 인연하여 공신을 濫授하였으므로 언관에 임명할 인적 자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중종 초기의 정계구성을 보면 공신세력은 언관을 장악하지 못한 약점은 지니고 있었으나, 대체로 정조를 중심으로 그들 주도의 지배체제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중종 초기의 공신중심의 지배체제하에서 사림파의 동향은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무오·갑자사화 이후 사림파의 피해의식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정권을 장악한 정국공신들도 새 시대 건설의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등장할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하였던 데에 기인하였다. 다만 소수의 사림파만이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정계에 진출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중종 9년 이후 특히 조광조의 정계진출 이후 사림파 세력은 중앙정계에서 급성장을 보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대체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sup>29)</sup>

첫째는 사람파 스스로의 노력이었다. 김광필·정여창 등이 謫居生活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했던 교육활동은 사람파 세력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중종대의 사람파는 주로 3사와 같은 언관직에 진출하여 훈구대신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파를 인사행정의 실무자인 銓郞職에 포함시켜 세력 확대

<sup>29)</sup> 이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서술은 李秉烋, 〈朝鮮前期 中央權力과 鄕村勢力의 對應〉(《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144~145쪽 참조.

를 꾀하였다.30) 그리고 그들은 과거·문음으로 등용할 수 없는 遺逸·學生을 선발하여 인재등용의 폭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薦擧制의 활용을 주장 하였다.31) 賢良科로 대표되는 이러한 천거제의 주목적이 사림파의 등용이었 던 것으로 보아 세력확대를 위한 사림파 자신의 노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일부 대신의 引進이었다. 성분상으로는 훈구파에 속하면서도 사림파를 이해하거나 사림파와 뜻을 같이 하는 온건보수파 대신인 鄭光弼・安瑭의 노력에 의하여 사림파 인재의 등용이 이루어졌다. 특히 안당은 이조판서재직시인 중종 10년(1515) 조광조·金湜·朴薰을 천거하여 擢用의 길을 터줌으로써 사림파 진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그는 사림파의 성장이후 그들에 의해 우의정으로 陞秩되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반대급부를 받게 됨과 아울러 훈구파·사림파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셋째는 국왕의 입장이었다. 중종이 정국공신에 의해 추대되어 즉위초에는 반정 주도세력에게 영향을 받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점차 자기 위치를 확 보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왕권행사에 제약을 가하던 훈구파 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할 새로운 세력형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러한 의지는 곧 중종 10년부터의 사림파의 본격적인 등장에 투영되어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힘입어 중앙 정계에 재진출하게 된 중종대의 사림파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정국공신 중심의 집권체제에서 야기되었던 각종 정치적·사회적 모순을 시정하고 堯舜三代의 유교적 이상주의, 즉 至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시 사림파의 개혁론이나 개혁정치는 대체로 두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그 한 갈래는 단절된 명분을 이어줌과 아울러낡은 제도와 인습을 혁파함으로써 새 통치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다른 한 갈래는 새 통치질서 수립을 위한 사회·문화

<sup>30)</sup> 金字基, 앞의 글.

<sup>31)</sup> 李秉烋、〈賢良科 研究〉(《啓明史學》1, 1967).崔異敦、〈16세기 士林派의 薦擧制 강화운동〉(《韓國學報》54, 1989).鄭求先、《朝鮮時代의 薦擧制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2).

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이같은 개혁의 추진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상반된 훈구파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수 없었다. 개혁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개혁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저항도 크기 마련이었다. 심지어 사림파에 온정적이었던 정광필과 같은 온건보수세력의 대응도 집요하였으며, 金正國과 같은 동료 개혁론자도 비판적 시각을 가질 정도였다.

특히 '僞勳削除'의 경우는 중종대 사림파의 과감성을 확연히 보여 준 사례였다. 조광조 등장 이후 사림파의 언론활동 및 개혁으로 자기 기반을 상실해가던 훈구파에게 위훈삭제사건은 집권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의도로인식되었다. 한편 중종도 당초에는 훈구세력의 지나친 천단을 막고, 정국의안정을 위해 사림을 중용하고 그 정책에 호응해 왔으나, 사림파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과 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그들의 과격함에 불안과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양자의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己卯土禍였다.

기묘사화는 위훈삭제가 결정된 4일 이후 갑작스럽게 일어났지만, 이미 이전부터 불안감을 지녀 오던 훈구대신과 국왕의 감정이 위훈삭제사건을 계기로 표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중종의 밀명에 의해 洪景舟·南袞·沈貞등이 중종 14년 11월 15일에 조광조 등 사림파를 체포·하옥함으로써 사화가 시작되었다. 훈구대신들은 사림파에게 "서로 붕당을 맺어 자기를 따르는 자는 이끌어 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한다"32)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의 처벌규정을 《大明律》名例律 姦黨條에서 끌어와서 조광조·金淨 등에 대해서는 賜死를, 그 외의 인물에게는 그에 버금가는 重刑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정광필·이장곤 등 일부 온전파 대신의 만류로 사사 대신 圍籬安置로 결정되었으나, 심정·남곤 등의 계속적인 加罪 요청으로 결국 조광조는 사사되었고, 金絿·김정·김식은 絶島安置, 尹自任·奇遵·차世憙 등은 極邊安置, 정광필·이장곤·金安國 등은 파직되었다. 그들중 상당수는 조광조 등장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사림파의 引進에 의해 성

<sup>32) 《</sup>中宗實錄》 권 37, 중종 14년 11월 을사.

장한 신진사류로서 대체로 조광조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기묘사화를 통해 대거 제거됨으로써 사림파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물론 소수의 사림파는 정계에 잔존해 있었지만, 그 일부는 다시 辛巳誣獄으로 제거됨에 따라 이후의 정국운영은 당분간 훈구파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묘사화 직후 집권훈구파는 사림파의 개혁성과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어 갔다. 즉 삭혼된 靖國功臣의 작위를 회복해주는 한편, 현량과의 罷榜, 향약의 폐지 등 개혁정치를 청산하는 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모든 통치질서를 개혁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말았다. 이에따라 道學政治의 실현은 좌절되었으며, 이후 사림파는 주로 향혼에 은거하여그 곳의 세력기반을 다지는 잠재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 6) 을사사화

기묘사화에서 중종말까지에 이르는 治世는 대체로 세 시기로 세분될 수 있다.33) 기묘사화 이후 중종 26년(1531)까지는 起禍人을 주축으로 한 훈구파주도의 정국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동왕 26년에서 32년말까지는 權臣 金安老의 擅權期였다. 끝으로 동왕 33년에서 39년까지는 김안로가 실각하면서 훈구파가 주도하는 정국으로 환원되었다. 단 마지막 시기에는 일부 사림파가 재등용되면서 잔존 사림파와의 연결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기묘사화 직후 의정부는 남곤·홍경주·심정 등을 위시하여 金詮·柳聃年·李荇 등이 장악하게 되었고, 정광필·안당 등 사림파와 일정한 연관을 가졌던 인물들은 散職으로 밀려났다. 6조와 언관도 高荊山·李沆·金謹思·李蘋·金克愊 등이 주도하는 체제로 바뀌었으므로 사림파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성취된 개혁의 거의 대부분을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종 16년에 홍경주가 죽고, 22년 남곤이 죽음으로써 3인 주도체제는

<sup>33)</sup> 이 시기 정국에 추이에 대한 서술은 李秉烋, 앞의 글(1990), 153~157쪽 및 〈朝 鮮前期 支配勢力의 葛藤과 土林政治의 成立〉(《民族文化論叢》11, 嶺南大, 1990), 176~186쪽 참조.

일단 해체되었고, 홀로 남은 심정과 그의 우익인 이항 등이 훈구세력의 구심 점을 형성하면서 다소 약화된 채로 종전의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김안로의 등장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는지난 날 사림파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련을 가져왔던 인물인데,사화 이후 훈구계에 가담함으로써 중종 19년 이조판서에 보임되는 기회를얻게 되었다. 그 뒤 그는 남곤·심정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일시 유배를 당하였지만, 아들 禧가 부마임을 적극 활용하여 동왕 24년에는 放還되었으며,그의 우익인 金謹思·沈彦光 등을 요직에 앉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곤이 죽고 난 이후의 취약한 심정 주도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중종 25년에는 직첩을 환급받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심정의 죽음과 함께 재서용되는 기회를얻었다. 그는 다시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까지 오르면서 정치를 농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종의 제2계비인 文定王后를 폐하려 한다는 대사현 梁淵 및 문정왕후의 族親인 尹安仁의 탄핵을 받아 사사되었고, 그의 우익이었던許流・蔡無擇 등도 같은 조처를 받았으며, 김근사는 관작을 삭탈당하고 門外黜

點発되었다.

남곤·심정 집권하에서나 김안로 천권하에서나 정부가 그들을 주축으로 하는 훈구파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소수의 사림 파가 잔존하여 정부의 일각에 고립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대개 사림 파의 계보에 속하면서도 개혁정치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아 화를 모면한 인물들이거나, 처음부터 사림파와의 관계를 가깝게 설정하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기묘사화 당시에는 출사 전이었거나 官歷이 짧아 개혁에 참여할 기회를 미처 얻지 못한 인물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었다.

김안로의 실세 이후 실권은 다시 훈구파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의정부는 尹殷輔‧柳溥‧洪彦弼‧金克成 등에 의해, 6조는 權輗‧曹繼商 등에 의해주도되었다. 6조나 언관에 있어서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의정부의 경우는 중종말까지 윤은보(영의정)—홍언필(좌의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앞 시대에 비해 사람파의 진출이 다소 활발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종 33년초에는 김안국ㆍ김정국ㆍ申光漢 등이 재서용되어,이미 재등용되어 있던 權機과 연결되면서 이후 사람파 재등장의 전기를 마

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내에 사림파의 분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己卯人'의 재등용에 말미암은 것보다는 신진 사림파의 진출이 더욱 큰 몫을 한 때문이었다. 언관, 특히 홍문관의 구성에서는 李浚慶・林億齡・具壽聃・李滉・羅世纘・尹希聖・李瀣・羅淑・鄭希登・宋世珩 등의 사림파가 포진하게 되었다.

인종대에도 중종 말기의 정치적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다만 중앙정부의 구성상 사림파의 비중이 좀더 커진 것이 하나의 변화였다. 의정부의 구성은 이제까지의 윤은보·홍언필 주도체제가 홍언필·尹仁鏡 주도체제로 바뀐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成世昌·李彦迪·권벌 등이 貳相의 직에 있었음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6조에서는 신광한이 이조판서에 오랫동안 재임하는 가운데 柳仁淑·尹漑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 대간에서는 閔齊仁·이해·宋麟壽 등이 대사헌을 맡았고, 朴光佑·宋希奎·丁熿 등이 그 밑을 받치고 있었으며, 구수담·李潤慶 등이 대사간에 재직하였고, 許伯琦·郭珣·金鸞祥·盧守愼 등의 존재가 그 하부에서 확인된다. 홍문관에서는 宋世珩이 부제학을 오래 지내면서 그 곳을 주도하였다. 그러다가 인종 원년 6월,즉 인종의 죽음에 임박한 시기에는 柳灌과 성세창이 각각 좌·우의정이 되었으며, 이언적이 좌찬성에 올랐고, 6조에서는 尹任이 형조판서에 보임된 것이 눈에 띈다. 대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홍문관에서는 李若海·이황·박광우의 존재가 확인된다.

위와 같이 중종말 이래 인종대에 걸쳐 사림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외척의 동향 또한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왕세자(인종)의 외삼촌인 윤임과 慶原大君(명종)의 외삼촌인 尹元衡 및 그 지지세력간의 미묘한 갈등이 곧 그것이었다. 그 와중에서 사림파는 명분상 세자측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乙巳土禍 때 피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인종의 짧은 치세는 중종대의 연장선상에서 사람파의 복권이 성취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명종 즉위초에도 중앙정부의 구성성분이나 정치적 분위기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었다. 政曹 내에서는 이언적·권벌·신광한 등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언관은 사람과 우세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들 특유의 公道·公論을 창출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정왕후와 연결된 李芑와 윤원형 등은 그 세력의 취 약점을 보강하고 상대세력을 견제함으로써 그들 주도의 정치운영체제를 구 축하려 하였다. 그 결과 명종 즉위년(1545) 8월 하순에 을사사화의 대옥사가 일어난 것이다.<sup>34)</sup> 사화는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이기·윤원형 등이 대간으 로 하여금 윤임ㆍ유관ㆍ유인숙 등을 탄핵케 하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대간 이 이를 거부하자, 부득이 이기 · 윤원형을 비롯한 鄭順朋 · 林百齡 · 許磁 등 의 주도하에 대신들만이 忠順堂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윤임은 '不自安之心'하고 유관·유인숙은 '形迹'이 있었다는 애매모호한 죄목 으로 각기 유배, 파직, 遞差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홍문관의 관원과 執義 송 희규·사간 박광우 등이 그 부당성을 논박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加罪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뒤이어 권벌이 유관·유인숙의 억울함을 극력 변론함 으로써 그 자신도 '護黨'으로 몰리면서 3인에게는 더욱 죄가 늘어나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위의 3인과 李輝・李德應 등은 참형에 처해졌고. 권 벌은 체차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衛社功臣 28인. 原從 功臣 1,400인이 冊錄되었다. 그러나 상대세력에 대한 분쇄작업은 거기서 그 치지 않았다. 경기도 관찰사 金明胤이 桂林君 瑠와 鳳城君 岏을 역모로 고변 함으로써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사림세력은 크게 위축 되었다.

을사사화에 의해 지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권신이기와 척신 윤원형이 주도한 공신 중심의 지배체제는 애초부터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이를 보강하는 방안으로써 사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작되거나 무고되었다. 그 하나는 명종 2년 9월에 일어난「良才驛 壁書事件」인데, 이는 척신계열의 鄭彦慤이 양재역의 벽 위에 첨부되어 있던 문정왕후와 이기의 弄權을비난한 내용의 글을 보고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사건으로 宋麟壽·李若氷·林亨秀·봉성군 완·成子澤 등은 사사되었고, 이언적 등 3인은 極邊安置되

<sup>34)</sup> 을사사화의 전개과정 및 이후의 정국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禹仁秀, 〈朝鮮 明宗朝 衛社功臣의 性分과 動向〉(《大丘史學》33, 1987). 金字基,《16世紀 戚臣政治의 展開와 基盤》(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5).

었으며, 노수신·정황·柳希春·김난상 등은 絶島安置, 權應挺 등 8인은 遠方付處, 권벌·송희규 등 14인은 中途付處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명종 3년 (1548) 2월에는 을사사화 당시 사관이었던 安名世가 이기의 죄상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武定寶鑑》 편찬 준비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또 한 차례의 타격이 잔존 사림파에 가해졌다. 그 뒤 명종 4년 4월에는 이약빙의 아들 洪男이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寧越에 귀양가 있던 중, 그 아우 洪胤을 역모로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희생된 사람은 주로 忠州에 거주한 이약빙의 문인들이었는데,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죽은 자만 士庶를 합쳐 300명에 달했으며, 한 面이 텅 빌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화가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김안로의 실세 이후 점증의 추세를 타고 중앙정부내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己卯人'의 복권, 현량과의 復科를 가능케 했던 사람파는 그 구심점이 분해되었고, 그 피해는 주변에까지 파급되는 타격을 입었다. '기묘인'의 복권은 백지화되었고, 현량과도 다시 罷榜되었다. 이후 척신정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설사 소수의 사람파가 정부 일각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지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게 되었다. 을사사화를 비롯한 일련의 獄事는 좁게는 외척의 실력대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넓게는 성장일로의 사람세력에 대한 훈구세력의 위기의식과 공도와 공론에 입각하여 정치를 운영하고자 한 사람파의 통치원리에 대한 훈구파의 괴리감정 등이 첨가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더욱 격화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공도론의 출처는 사람세력이었고, 척신정권의 통치형태는 다수의 공론에 입각하지 않고 소수 특권층에 의한 과두지배 방식을 택하려 했기 때문이다.

을사사화 이후의 정권은 이기와 윤원형에 의해 재단되었다. 그러나「안명세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양자는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기가 이 사건을계기로 사림파에 대해 추가적 타격을 가하려 한 데 반해, 윤원형은 그를 견제할 목적으로 사건의 확대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기는 좌의정에서 일단 물러났으나, 뒤이어 일어난「李洪胤사건」을 계기로 조정에 복귀하여 이후 병사하는 명종 6년까지 영의정에 재직하였다. 이기의 죽음은 공신세력의 실질적인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핵심 인물들이 노환으로

죽거나 공신호를 삭탈당한 상황이어서 윤원형을 비롯한 척신세력이 자연스 럽게 정권을 천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최신지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沈連源·沈通源 등 또 다른 외척세력이가세함으로써 그 체제는 더욱 굳어졌으며,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명종비의 조부인 심연원은 명종 3년 우의정에 卜相된 후 좌의정을 거쳐 동왕 6년 영의정에 올라 13년 병사할 때까지 윤원형의 체제에 순응하였다. 심연원이 이끈 의정부에는 비공신계의 尚震이 좌의정에, 공신이면서 윤원형의 族叔인 尹漑가 우의정에 보임되었고, 이들 3인은 윤원형의 막후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의정부에 재직하였다. 그 뒤 명종은 중전의 외삼촌인 李樑을 등용함으로써 윤원형의 독주체제에 일정한 견제를 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량은 沈義謙에 의해 제지되어 명종 18년 유배당함으로써 실세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윤원형 주도의 지배체제는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기까지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명종초의 몇 차례에 걸친 옥사를 통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림파는 중앙정계에서 도태되었다. 이 시기에 화를 입은 사림파 계열의 인물은 거의 100여 명을 넘는 큰 규모였다. 얼마 뒤 몇몇 사림파 계열의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지만 숫적인 면에서나 세력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맥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으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은 꾸준히 경주되고 있었다. 세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그들의 노력으로는 書院의 건립활동을 들 수 있다.35)

기묘사화 이후, 鄕約을 통해 향촌질서를 확립하려는 사림파의 노력은 더이상 정책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이 억제된결과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혼란은 이미 교화적 방식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에 그들은 방향을 전환하여 향약보다는 서원건립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향촌의 재지적 기반 강화 및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개선을 통한 새 통치체제 수립에의 접근이라는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이자, 상대세력의 경계권 밖에 있으면서도 현실

<sup>35)</sup> 사림파의 서원건립활동에 대해서는 李泰鎭, 〈士林과 書院〉(《한국사》12, 국사 편찬위원회, 1977) 참조.

적으로 재지 사림파의 세력 결집의 구심처를 얻을 수 있는 묘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종 38년(1543) 豊基郡守 周世鵬이 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을 효시로 그들의 서원건립활동은 진전을 보여, 명종대 20여 연간의 척신정치아래서도 18개소가 세워지는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李秉休〉

# 3. 사림세력 구성의 특징

## 1) 학파의 형성

고려 이래 유학이 연구되고 사회에 보급되었던 것은 정치권의 필요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왕실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정치 논리에서부터 행정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 도구적 수요가 유학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였다. 유학이 과거제도와 연결되자, 지배신분층은 유학교육과학문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배층은 단지 정치 참여라는 수단으로서가아니라 학문적 탐구를 위한 대상으로 유학을 인식하고 교육과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유학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사회 구현과 역사현실이 요구하는 정치적 절충은 儒者들에게 유학의 합리적 논리 안에서 제도의 제정과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보호하도록 유도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학 교육제도인 成均館·四部學堂·鄉校 등의 학교를 세워 유학을 교육하고, 과거제도로써 다시 그 성과를 수렴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의 구현 내용이라 하겠다.

유학에서 교육과 학문의 수수라는 면만을 주목한다면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유학의 학문 영역 안에 이미 정치적 요소를 폭 넓게 포함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상으로만 맺어진 인간 관계라 하더라도 스승과 제 자들간에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學派라는 학문적 관계 만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에서도 정치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조선 초기부터 이러한 유학 교육에서 파생되는 인맥 관계는 일차적으로 학파적 관계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곧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선 중기에 이미 士林勢力이라고 했을 때는 유자들 의 정치적 활동을 전제하는 것이다.1)

실제 사림이란 단순히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성종대이후 조선왕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유자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른바 '己卯黨籍'에 기재된 유자들을 사림세력의 핵심적 인맥으로 지적하려는 역사인식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이 정치적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왕조는 官學體制인 성균관·4학·향교 조직으로 유학을 교육한 것은 물론이고, 유학 교육과 과거제, 그리고 入仕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입문과 동시에 정치세력을 지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 주도의 유학 교육이 하나의 학문 성향, 또는 하나의 정치 성향으로 학자와 정치인만을 육성한 것은 아니고, 朝野에서 소위 勳舊와 士林으로 유자들의 집단을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여말선초에 성균관으로부터 비롯되는 유학의 전수와 수용과정에서, 유학교육과 연구가 왕조정치와 일치된 입장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학문의 성향을 달리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선 초기 이래 재야의 정치성향을 가졌으나, 성종대부터 중앙 정계에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자신 의 재지적 기반을 표시하여 자신들을 영남학파 또는 기호학파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건국과 함께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면서 서울을 떠나 자신들의 거처를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으로 옮겨 교육활동을 하면서 점 차 정치세력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학파들이 정치 적 또는 학문적으로 이와 같은 계보를 가지는 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 려되어야 한다.

<sup>1)</sup> 成樂熏,《韓國思想論攷》(同和出版公社, 1979).

첫째로, 재야에서 유학교육과 학문연구가 가능케 된 것은 家學的 배경이었다. 유학이 가학으로서 전수되고 이를 바탕으로 혈족적 기반으로 형성된 종 족 내지는 친족집단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이래 조선왕조에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安珦과 安軸, 權溥와 李齊賢, 李穀과 李稿, 金宗直과 金叔滋, 孫仲暾과 李彦迪, 李堣와 李滉 등에서 나타나는 가학적 상황, 즉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외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면서 자연스런 학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정계에 진출하고 있었다.2)

둘째로는 영남과 기호지방이 유지하여 온 삼국시대 이래 토착적 지방문화 풍토를 고려할 수 있다. 즉 경상·경기·충청·전라도지방 유자들의 지적 풍 토는 지방사회에서 갖는 문화적 자존의식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없이도 지배신분층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자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삼국시대 이래 자신들의 본관지에서 토호적 사회전통을 유학연구와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

재야에서 사림의 학문적 내용이 정치력으로 구현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학통을 정비하고 있었다. 사림은 鄭夢周를 조선조 성리학의 鼻祖로 연원하고 있었다. 정몽주를 학통으로 연원하려는 조선조의 유자들이 정치적으로 사림파로 자칭하려는 자세는 바로 이들의 학문성과 정치성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재야 출신의 사림 정치인들은 기성 정치권의 학문과 정치내용을 비판하고 일정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중종대에 개혁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趙光祖 역시 자신의 학문적 연원에 대하여 말하기를, "金宏弼은 비록 한때 벼슬로 이름을 떨치지는 못하였으나, 오늘날 선비 중에 그의 학업을 듣고 좇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역시많다. 이것은 바로 김굉필의 공적이다.…김종직이 처음 吉再에게 수업을 받고, 길재 역시 정몽주의 문인이었으니, 김종직의 학문 연원은 진실로 비롯함이 있다고 하겠다"4)고 하였다.

<sup>2)</sup>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sup>3)</sup> 위와 같음.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쾽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람의 학통은 학문에서 정통으로 인지되는 계보로서, 성리학의 정통성으로 주장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대의명분으로 수식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리학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림의 학문과 정치력이 일원화되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몽주와 길재 사이의 학문적 연계 사실은 고증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성이 강조되어 조선시대 사람의 계보 구성에서 학문상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림파가 주장하는 학문상 계보는 국가가 조정하거나 국가조직 가운데에 내재된 것이 아닌, 사림 사이에서 공론으로 형성된 사적 계보라는 점에서 왕조의 정치적 입장과는 대립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재야 또는 개혁적 성향의 정치성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다. 실제로 정몽주는 조선왕조의 성립에 반대한 유자이면서도 조선 성리학의 비조로 평가되는 학자였다. 이것은 왕조의 차원에서 조정되어 교육되고 선발된 집단에의해 권위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국초부터 왕조에는 비판적이면서도 보다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수식되고, 충절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성리철학과 정치활동으로부터 재야 유자들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된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

이들 사림은 성종대 이래 과거로 입사하여 조선조의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집단화와 권위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선 초기 이래 왕실 측근에 머물면서 이른바 훈척세력을 형성한 유자집단 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중종대에 조광조의 급진적 정치개혁이 갖는 역사성과 학과적 연원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림세력의 정치집단과 기왕의 훈척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정치적 갈등, 이른바 '土禍'가 발생하였다. 사림은 현실 세계와 학문의 세계에서 훈구세력의 유자와는 첨예한 시각차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사림과의계보를 정립하였다.

<sup>4) 《</sup>中宗實錄》 권 32, 중종 13년 4월 정유.

이들은 文集의 門人錄을 통하여 자신들의 학문적 연계가 있는 인물들을 망라하거나, 더 나아가 조선왕조 전체 유자들의 정치적 동향을 총정리하였다. 이같은 내용을 대표하는 저술이 바로 朴世采의《東儒師友錄》인데, 그 이전에도 유자들의 계보는 吳希吉의《道東淵源錄》, 曹植과 金宏弼의 師友錄, 金墳의《海東名臣錄》, 李喜朝의《海東儒先錄》등으로 정리되어 왔다. 이러한 것들은 유자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학문적 연결고리를 밝히려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밝혀보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5)

사림파에서 다시 嶺南學派・畿湖學派라고 부르는 것은 유자들의 거주지와 사승의 연고지가 영남 또는 기호지역이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학파의 명칭 또한 국가기관의 공적인 사승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림 들의 가학적 성향과 재지지주적 요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영남학파 또는 기호학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재지적 기반을 갖고 있는 유자가 사사로 운 사승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던 사실을 지칭하는 것 이라 하겠다. 이들 학파간에는 확연한 경계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정 한 정파로의 분리, 학문내용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간에 분명한 경 계가 있어 출입이 차단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유학교육의 열기는 관학의 퇴조로 인하여 냉각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관학의 퇴조는 오히려 사람의 유학교육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재지 유자들에 의해서 書院건립과 교육활동으로 나타났다.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들의 학문활동과 학문적 관심은 훈구적 유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학문에서 추구하는 지표는 정치권력과 운영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관과 인생관에 대한 궁극적 질문에 답하려는 유자적 접근이었다. 理氣로 표현되는 존재원리에 대한 학문적 구도자세로 성리학 연구의 학문적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학문적 동호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참여

<sup>5)</sup> 朴世采,《東儒師友錄》(尹絲淳 解題, 韓國教會史研究所, 1977) 참조.

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언적·이황·조식 등으로 연결되는 영남학파와 徐敬德·李珥·成渾 등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문 성향과 교육의 기회는 이들의 학문활동과 정치세력의 성격을 특징지웠다.6) 일차적으로 이들은 재지적 토착 생활기반에서 상호관계를 갖고 유학(성리학)을 공부하였으며, 그 유학 속에 내재되어있는 현실세계의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節義와 名分論, 그리고 《朱子家禮》가 갖는 향촌사회의 질서논리는 이들 유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학문과 교육의 내용이 되었다. 이것은 향촌사회내에서 지도자적 위상에 아주 걸맞는 사회사상 체계였고, 나아가 국가사회 단위에서 국가사회의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논리와 개혁사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학교육과 학문의 정진은 지주이자 향촌의 지식인인 유자들의 지배신분적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의미는 한편으로 왕실과 중앙 정치권과 연계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학문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지 유자들은 조선 초기에는 향교에서 수령과 협력하였고, 중기에는 서원을 건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림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학문적 동호집단으로 학파를 구성했다. 이들 유자들은 理氣哲學으로 몰입하면서主理論 또는 主氣論的 보편 논리로서의 宇宙觀・國家觀・人生觀의 인식을 토대로 하는 정치 성향의 국가의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향촌사회의 안정을 위한 보다 실용적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재지적 사림의 의욕을 보이는 학파가 사림세계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 2) 향당적 색채

사림의 학문활동이 재지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이들의 정

<sup>6)</sup> 李樹健, 앞의 책. 李秉烋,《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一潮閣, 1984).

치성과 사회성이 매우 鄕黨的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각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영남사림이니, 기호사림이니 하는 역사용어에서도 사림의 기반이 재지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학문내용이중앙정치를 위한, 또는 중앙 정치무대에 남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재지적사회활동과 정치행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정치적 기반이나 학문적 기반이 재지적 성격과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관심과 학문적 성취 목표가 국가적 내지는 중앙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림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이 이전의 유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지적이며 사림의 조직과 활동범주가 향당적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사림파가 주장하는 학문의 논리와 구조는 성리학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조선 성리학의 발전축에서 중앙 정치무대가 아니라 재지적이고 재야적인 사림이 조선 성리학을 발전케 한 사실에 유의한다면 성리학의 체계가향당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성리학은 우주론의 보편적 시각을 갖고 학문과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왕 또는왕실만을 위한 학문만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광범하고 본질적인 학문적 진리에 접근하려는 유자들의 학문 자세는 바로 사람의 성리학 수용자세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다면, 이들유자들은 왕실 또는 조정만을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정국, 지방사회, 지방문화에까지, 특히 지방인사들에게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논리로 인식하여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리학의 사회질서 논리인 鄕飲酒禮・鄕射禮 등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횡적 질서를 추구하는 의전의 내용이다. 향음주례・향사례의보편적 규범례는 우리 역사 안에서 鄕約・鄕規 등과 함께 향촌사회를 안정시키는 질서의 규범이자 의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재지적이며 향당적인 사림의 활동은 서원건립과 留鄕所復立運動 등에서도 확인된다. 서원에서 보여준 사회활동과 학문에 대한 열성은 바로 자신들의 주거지 중심의 서원에서 성리학에 대한 학구적 자세를 가다듬고 사림파의 정치활동을 변호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하겠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를 통한 백성의 교화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향소복립을 도모하였으며, 薦擧制를 내세우게 되었다. 유향소복립운동은 조선시대 사림의 중요한 사회활동의 중심 과제이었으며, 사림의 遺逸들을 천거하려는 운동 또한지금까지 과거와 蔭職만으로 관료선발을 유지해온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사림의 정치운동은 바로 향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7)

지방에서의 지주적 생활을 중심축으로 하는 경제구조가 이들 유자에게 자신들의 경제활동, 학문과 사회활동, 나아가 정치활동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성리학의 학문구조에 공감하게 하고, 사림은 이 학문을 수용・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세력 입지강화의 수단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사림의 재지적 기반에서 성리학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한 역사상은 조선 초기 이래 지방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이상승 작용한 결과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재지적인 사림파의 활동을 활성화시켰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의 전통을 가진 조선 유교정치의 속성은 이들 사람의 재지적 활동의 활성화를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았다. 초기의 유향소운동에 반대한 중앙 정치세력은 재지세력이 자치적 입장에서 조직한 유향소를 혁파한다든가, 部民告訴禁止法 등으로 지방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유자들로 구성된 品官이나 향리 또는 民의 정치운동을 억제하였다는 사례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말 이래 지방 토호층에서 起身한 향리로부터 사족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은 꾸준히 자신들의 경제력을 토대로 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중앙 정치세력과 대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져갔다.8)

물론 이들의 중앙정계로의 진출과 정치적 대결에서 확고한 입지를 정립한

<sup>7)</sup> 李秉烋, 앞의 책.

李泰鎮,〈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上·下)〉(《震檀學報》34·35, 1972·1973).

<sup>8)</sup> 李泰鎭, 위의 글.

것은 몇 차례의 土禍라는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였다. 사람이 기반으로 하는 전국에 걸친 재지적 기본 요소는 이들 사람의 정치력을 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자활 능력을 가진 토호적 지주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주는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원을 자신들의 온상으로 활용하였다. 즉 사람은 지금까지 성균관과 향교로 되어 있는 관 주도의 유학교육과 맞서, 서원운동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고 심화・발전시키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향당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었다.

지주제 농업경영을 옹호하고 보편론과 합리론으로 왕실과 중앙집권적 정치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 성리학의 정치적 안목은 사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사림은 민본사상을 내세우면서 유자 자신들의 역할의 장을 얻고자 왕실과 함께 정치에서 역할분담을 주장하였다.

사림의 정치적 성공은 중종대 사림세력의 대표격인 조광조의 정치개혁에서 찾아진다. 조광조의 정치개혁에서 주장된 주요 내용은 역시 향당적 요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인륜의 명분에 정치적 정당성과 '至治'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昭陵 복위의 건이라든가(소릉은 문종비인 顯德王后의 陵號로, 단종의 폐위에 이어 폐릉되었다), 중종비 端敬王后 愼氏의 복위(신씨는 반정 후 朴元宗‧柳順汀‧成希顏 등 靖國功臣들에 의해서 폐출되었다) 주장은 사림파의 공신세력에 대한 정치적 견제라는 이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이 갖는 보편적 인륜의 규제가 왕실에도 가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발의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향촌에서 기거하는 일반 민의 생활윤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윤리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지금까지 궁중에서 보존되어 온 궁중 女樂을 폐지하고 男樂을 시행케 한다든가, 지금까지 궁중의 사적 재정의 요소로 훈구세력의 경제적 이해와도 깊은 연계가 있는 內需司 長利制度를 혁파케 한 것은 농민의 생활과 사림의 향촌생활의 안정에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보아야 할 내용이었다.

향촌질서를 성리학적 윤리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이들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었다. 관학인 향교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書齋와 서원에서 《朱子家禮》와《小學》의 교육을 강조한다든가, 유향소를 통한 향리의 규찰, 鄕風敎化, 社倉制의 운영, 鄕約의 실시 등은 사람이 추진한 것이다. 이것은 유교정치에서 향촌질서의 확립이 성리학적 윤리질서와 통치질서의 기축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선의 정치에서 公論의 조성 또한 향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는 중 종대에 이르러 안정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사람이 공론의 형성층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무대가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이 아니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유교의 공론정치가 중종대에 보였다는 사실은 사람의 향당적 요소 위에서 형성된 공론의 정치여론이 숙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9)

## 3) 사림의 성향과 특징

성종대 이후 정계에 등장한 사림의 역사적 위상 중에서 재지적 색채 그 자체도 사림의 성향과 특징을 시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이들이 추구한 성리학의 학문 가운데 《소학》과 《주자가례》의 실천을 강조한 내용에 관한역사적 인식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소학》은 사림의 학문적 계보를 밝히는 과정에서 金宏弼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강조되었고,《주자가례》는 정몽주를 우리 나라의 道學, 성리학의 비조로 평가하면서 항상 강조되는 주제였다.10)

《소학》과 《주자가례》의 주제가 사림의 학문적 관심사에서 매우 주요한 위상을 차지한 점은 그들이 성리학을 학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그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구체적 사항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소학》과 《주자가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교육의 교과서를 대표하는 《소학》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재현하려는 학문적 의지가 이들 학통의 중심사상 속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소학》은 사림계 인사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내용이 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자신들의 생활에서 재현하려고 하

<sup>9)</sup> 崔異敦,《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一潮閣, 1994).

<sup>10)</sup> 金駿錫, 〈朝鮮前期 社會思想〉(《東方學志》29, 延世大, 1981).

였다. 이 점은 이들의 정치개혁의 의지와 개혁 논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었다.

《소학》은 주자가 三代의 《소학》에서 교육하였던 내용을 복원하고자 의도했던 교과서이다. 《소학》의 敎人法은 灑掃·應對·進退의 節度와 愛親·敬長·隆師‧親友하는 도리이다. 즉《소학》이 지향하는 인간형이 《소학》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의 완성은 국가질서의 확립이라는 논리로 연결되어 있다. 즉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大學》의 논리는 이《소학》교육의 실천과 연계되어 있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사회, 良村과 善俗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敎人으로 완성된 인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자는 《소학》이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童豪에게 강조되어야 할 책이라고 역설하였다. 《소학》은 지배자이거나 피지배자이거나를 막론하고 가르쳐야 할 교재였던 것이다. 주자학을 수용하려는 유자들은 《소학》을 중시하고이를 '化民成俗'의 길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權近은 백성을 다스림에는 교육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학》을 중시하면서교인을 위한 정책수행을 주장하였다.

유교 교화론의 바탕에는 《소학》이 반드시 깔려 있었다. 사림의 학문내용을 지적하는 많은 자료에서 《소학》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예컨대 김광필은 '소학동자'로 호칭되면서까지 《소학》을 생활화하려는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송대의 주자가 구상한 地主와 佃戶의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질서를 위한 선량한 풍속, 양질의 인간을 위한 교육을 이루려는 교과서가 《소학》 임을 확신하는 유자들에게는 바로 《소학》이 자신들의 행위 교범서임을 자부하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중국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주자가례》의 실천적 수용자세와 인식이다. 《주자가례》가 주자의 저작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나라의 주자학 수용단계에서 주자의 저작물 이상의 역사성을 갖고 유자들에게 접근되어 이해되고 있었다.<sup>11)</sup>

<sup>11)</sup> 琴章泰、〈朱子家禮의 形成過程〉(《東洋哲學研究》14, 東洋哲學研究會, 1993).

《주자가례》는 冠・婚・喪・祭라는 의례를 통하여 혈연공동체인 종족공동체의 삶을 질서있게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생활규범이다. 《소학》이 지배・피지배 신분을 구별하지 않는 범사회적 규범인 인간윤리를 내용으로 한다면, 《주자가례》는 종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보편적 사회질서의 가치를 기저로 한 생활규범인 것이다.

의례의 형식에서는 중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말선초 이래 유자들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通過儀體的 내용, 즉 관·혼·상·제의 의례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문화의 동일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중국문화를 수용하려는 원인은 문화적·사대사상적 요인도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문화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의식에서 《주자가례》를 습용하고, 의례를 통해서 전달되는 유교문화를 수용한 문화인으로서 자부심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례는 남녀 모두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성인식의 의미가 있다. 성인이 되면 혼례를 하게 된다. 혼례는 곧 다른 종족과의 첫번째 교섭과 협력의 절차를 의례화한 것이고, 동시에 도덕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종족과의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동시에 인간애를 촉발케 하는 의례였다. 상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재인식하게 하면서 生者와 死者와의 관계설정과 동시에 세대교체에서 파생되는 사회혼란의 문제를상례의식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지혜였다고 하겠다. 제례는 인간의 성장과 주변 종족집단간의 관계와 세대교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례였다. 따라서 관혼상제는 사대부의 종족집단 공동체의 사회적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社會儀式의 의미를 갖는 《주자가례》의 습용은 현실적으로 이들 유자들에게 학문적 욕망과 이상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전통이 《주자가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스스 로 밝혀지는 것이다. 중국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관·혼·상·제의 내용을 이 시기의 유자들 곧 사람이 주자의 관·혼·상·제와 합일시키려는 노력이 《주자가례》의 연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노력이 심화되어 사람내에서 하나 의 禮學派가 성립하게 되었다. 《가례》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17세기에 와서 소위「禮學」시대라는 단계에 이르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림이 《주자가례》를 실천하고 이를 소화·수용하려 한 의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에서 지적해야 하는 내용은 《주자가례》가 갖는 보편적 가치론에 의거한 질서체계와 재지적 사림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에 이 《주자가례》의 의미가 중요했다는 점이다.12)

예론은 고전적 유학체계에서 이미 禮經으로 파악되는《儀禮》·《問禮》·《禮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인간의 개별적인 질서 의식의 자각을 강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정치적으로 유학의 질서체계로 정립되어, 이른바「五禮」의 형식으로 나타나 皇帝權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宋代의 사대부 유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위상과 정치적 욕망을 황제권과 어울리면서 주장할 수 있는 질서론을 보편적 가치체계와 기초적인 논리 안에서 예제를 정리했을 때, 바로 관·혼·상·제라는 통과의례적 의례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13)

황제로부터 사대부, 서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통과의 례적 내용인 관·혼·상·제의 의례는 황제 중심의 5례의 구조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례》가 갖는 보편적 가치체계는 황제권을 구속하는 보다 기초적 가치론에 있다는 점이 후일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적 논리로까지 발전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사람이 순수한 학문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세력으로 전환하였을 때, 보편적 가치론에 기초한 《주자가례》는 이들의 정치적 보호막이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의 사림세력이 《소학》과 《주자가례》의 수용에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재지적 지주로서 유학을 공부한 유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성향이 모두 역사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만은 아니었다. 재지적 성향에서 비롯한 지방적 색채와 종족적 집단의식의 팽배는 소위

<sup>12)</sup> 高英津、《朝鮮中期 禮說과 禮書》(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sup>13)</sup> 李範稷、《韓國中世禮思想研究》(一潮閣, 1991).

「朋黨的」성향으로 발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성리학은 학문 자체가 갖는 보편적이고 세계사적인 논리를 그 내용 안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현장에서는 사림의 사회활동에서 당색적 내용을 찾을 수있는 근거를 남겼다. 학파가 지역성과 가계에 연결·세습되면서 사림은 붕당적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 문묘배향운동

文廟儀禮는 유교정치문화를 상징하는 왕조의 祀典체제 속의 吉禮儀 가운데 중요한 의례이다. 문묘는 왕실의 宗廟와 함께 정치세력의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상징하였다. 종묘가 왕권의 정통성을 정치적으로 상징하면서 祖宗의位牌(神主)를 봉안했다면, 유자들은 유학 안에서 敎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학자들 가운데 주요 인물의 위패를 문묘 안에 奉崇하였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인준과 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낸 정치와 학문의 종합적 상징물로 이해된다.

중국에서는 孔子를 비롯하여 공자의 학문을 계승한 유학자들의 위패가 문 묘에 봉숭되고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공자의 신주를 비롯한 중국의 유학 자와 우리 나라에서 유학을 수용・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유자들의 신 주를 문묘에 봉숭하였다.<sup>14)</sup>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薛聰·崔致遠과 고려의 安珦이 공자의 신주와 함께 문묘에 配享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문묘 설립과 그 안에 배향한 유자들의 선정작업의 성격과 조선시대의 문묘배향 인물의 선정 배경에는 일정한 차이 가 있다. 조선시대의 문묘배향에서는 고려시대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욱 고려 되었다.

조선왕조의 사전에서 문묘의 설립과 새로운 유자의 배향 문제는 역시 崇 儒抑佛의 왕조답게 왕실에서 왕조례인 五禮를 수용하고 습용했다. 그러나 고 려시대와는 달리 문묘배향에서 순수하게 공자의 학문을 계승·발전시켰는가

<sup>14)</sup> 朴贊洙、〈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의 여부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하면서 문묘배향의 인물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 초기 문묘배향에서 李齊賢·李穡·權近이 거명되고 있었으나, 이들의 정치적 거취가 문제되면서 결국 문묘배향에 실패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조선 초기에는 왕실과 유자 관료들간에 정치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문묘에 배향할 새로운 인물을 선정할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림세력이 증가하고 왕실이 이들 사림을 견제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이 정치력의 균형을 상징한 문묘배향의 위패 선정이 결정되었다. 문묘배향 인물이 정몽주를 비롯한 사림이 추천한 유자들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 道學政治思想의 대두가 사림세력의 정치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때, 이들의 상징적 운동으로 문묘배향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었다. 사림은 중종대에 정몽주를 문묘에 배향하고, 선조대에는 金宏弼・鄭汝昌・조광조・이언적・이황 등의 문묘종사를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의 문묘에 공자와 함께 배향될 수 있는 인물을 새로이 선정하는 작업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림의 발의와 왕실의 동의가 필요한, 정치적으로 매우 합일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문묘배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이미 문묘는 국가의 祀典 안에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는 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묘에 배향되는 인물의 위상은 학문적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정 치적 보호를 획득하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왕실편에서도 문묘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유자의 문묘배향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정 인물의 문묘배향을 위해서 사림이 왕실에 요구하는 경우, 대체로 왕실은 이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문묘종사에 선정된 인물과 연계된 유자들의 학파는 왕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므로, 왕실로서는 종묘와 더불어 신성시할 수밖에 없었던 문묘배향에 현실적으로 사림의 인물을 극소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sup>15)</sup> 金鎔坤、《朝鮮前期 道學政治思想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결국 중종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조선의 문묘에 정몽주의 배향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에서도 왕이 결정하기까지에는 여러 차례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사림세력의 대두와 이들 세력의 정치력이 결국 정몽주를 자신들의 학연과 학문적 성향인 도학의 내용을 명분으로 해서 중종을 설득하여 문묘배향하였다. 이후 정몽주의 문묘배향이 계기가 되어 점차 배향인물이 증가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사림의 정치력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문묘배향 인물의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왕실과 사림 사이의 정치적 긴장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선조대의 문묘종사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사림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선조대에 와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이 일거에 문묘배향 인물로 제기되고는 있었으나, 결정이 미루어졌다. 16) 왕실의 정치력을 견제하는 사림의 정치력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묘에 배향할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정치에서 사림의 합일된 힘의 표출이 필요하였으나, 선조대 사림의 분열은 선조로 하여금 문묘배향에 새로운 인물의 선정을 미루도록 하였다.

다음 광해군 2년(1610)에 가서야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이른바 '五賢'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는 광해군이 사림의 협조를 받아야 할 정치적 상황에서 사림의 요구를 더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쟁이 본격화되기 전, 사림의 합일로 문묘배향 인물을 선정한 경우라 하겠다.

문묘배향 인물의 선정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은 南冥 曹植의 문묘배향운 동이 결국 무산되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조식의 문묘배향을 위한 사림의 움직임은 전국적인 상소운동으로 나타났다. 鄭逑가 首論한 儒疏를 비롯한 경상도 유소가 7번, 成均館 館學疏가 10번, 四學疏가 2번, 公洪道 유소가 7번, 전라도 유소가 4번, 開城府 儒疏・玉堂箚・司諫院疏가 각 1번, 경기・충청・경상좌도 유생소가 각 1번 등 8도의 유생소가 총 36회에 달하였으나, 결국 왕의 不允으로 조식의 문묘배향은 실패했다.17)

<sup>16)</sup> 金鎔坤, 위의 책,

朝鮮陞廡諸賢文選刊行會,《朝鮮陞廡諸賢文選》(民族文化社, 1925).

<sup>17)</sup> 權仁浩、《朝鮮中期 士林派의 社會政治思想 研究》(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90).

학문적 업적면에서 당대의 山林으로 퇴계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조식이 결국 문묘에 배향되지 않았다는 것은 왕실과의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유학계의 정치성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18)

이미 문묘에 배향된 정몽주를 비롯하여 문묘종사 인물의 선정과정에서 왕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항상 왕의 결심은 완만하였으며, 사림의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어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야 마지못해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쟁이 정돈되어 西人 老論系의 정치세력으로 사림의 세력이 강화되었을 때 서인 노론계의 유자들이 문묘에 배향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이는 것이다.

학통과 정치적 연계 속에서 李珥・成渾의 위패가 문묘에서 黜享, 復享의과정을 거치게 된 것 또한 문묘배향이 갖는 이러한 정치적 단면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숙종 15년(1689)에 南人이 집권하자 이이와 성혼이 출향되고, 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이이와 성혼이 복향된 것이다.19) 뒤이어 金長生이 배향되고, 영조대에 와서 다시 宋時烈・宋浚吉・朴世采가 문묘에 배향되었다.

송시열의 문묘배향운동에서도 역시 사림과 왕실과의 정치적 힘겨루기가나타나고 있었다. 송시열의 문묘배향운동은 그의 스승인 김장생의 문묘종사운동과 함께 비롯되었다. 숙종 37년 영남유생 천 수백 인이 상소하여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청하였다. 이후 동왕 38년 10월까지 8도 유생의 상소가 4소까지 이르는 전국적인 사림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동왕 39년 9월에 8도 유생소가, 41년에는 관학 유생소가 있었으나, 결국 43년 2월에 가서야 김장생의 문묘배향이 윤허되었다.

숙종 43년 노론의 정치적 안정세가 이루어진 다음, 전라도 유생 鄭敏河가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묘종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노론·소론의 정치적 불균형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蕩平策이 정치권에서 운위되는 기간에도 역시 미루어지고 있었다. 당쟁이 완화되었을 때 문묘종사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으나, 결국 노론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후인 영조 31년(1755)에야 송시

<sup>18)</sup> 金忠烈, 〈生涯를 통해 본 南冥의 爲人〉(《大東文化研究》17, 成均館大, 1983).

<sup>19)</sup> 許捲洙,《朝鮮後期 南人과 西人의 學問的 對立》(法仁文化社, 1993).

열과 송준길의 문묘종사 문제가 결정된 사실에서도 이 문묘종사(배향)의 상 징성이 왕실과 사림간의 정치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문묘의 원리가 도학의 정통성, 대의명분으로 수식되는 것은 외피적 표현이고, 조선 유학 정치논리 안에서 사림과 왕실간의 정치적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배향인물이 선정되었 던 것이다.

이어 정조 20년(1796)에는 金麟厚, 고종 20년(1883)에는 趙憲과 金集이 종사 되었다. 우리 나라 유자로는 18명이, 공자 이하 중국의 유자들은 113명이 조 선 문묘에 위패가 봉안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漢에서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여 공자의 신주를 향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유자들과 협력하는 관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묘제도가 정립되는 것은 唐의 五禮체제가 정리되는 玄宗代로서, 孔門의 70제자가 향사되는 것으로 문묘제가 완성되었다.

南宋 말기부터 주자학이 정치사상계를 풍미하자 문묘향사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되어 결국 明의 世宗 때에는 광범한 개편이 있었으며, 이에 송대 이래 최소 규모인 105인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淸의 중국지배와 더불어 문묘종사는 민심회유의 한 방편이 되어, 그 수가 156명으로 증가되었다.20)

다음 〈표 1〉에서 보이는 문묘종사의 특징은 바로 조선정치사에서 유자들로 구성된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學統과 연계하면서 政派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문묘종사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광해군 정권은 대의명분에서 사림의 지원을 의식했던 정치적 취약 시기에 대거 5인의문묘배향인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붕당의 균형이 있었던 시기에는 또다시 배향이 정돈상태에 있었다. 문묘종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붕당간의 균형이 깨지는 숙종대(栗谷・牛溪・沙溪)와 영조대(同春堂・尤庵・玄石)로, 이것은 서인정권의 압도적 정치세가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묘배향 인물의 선정은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학문적 업적이 요인이 되고는 있으나, 또 병행해서 정치력의 협력이 가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sup>20)</sup> 朴贊洙, 앞의 글.

#### 〈丑 1〉

#### 조선 문묘배향 인물

	號와 諡號	生沒年代	文廟從祀年代	主祀 書院	비고
薛 聰	弘儒侯(고려)	新羅 神文王?	고려 현종 11(1022)	慶州 西嶽書院	
崔致遠	文昌侯(고려)	858~ ?	현종 9(1020)	慶州 西嶽書院	入唐求學
安珦(裕)	晦軒, 文成公	1243~1306	충숙왕 6년(1319)	順興 紹修書院 (조선 중종)	元에 留學
鄭夢周	圃隱, 文忠公	1337~1392	조선 중종12년(1517)	開城 崧陽書院	
金宏弼	寒暄堂	1454~1504	광해군 2(1610)	玄豊 道東書院	小學童子, 甲子士禍
鄭汝昌	一蠹,文獻公	1450~1504	광해군 2(1610)	咸陽 藍溪書院	金宗直門徒 甲子士禍
趙光祖	靜庵, 文正公	1482~1509	광해군 2(1610)	龍仁 深谷書院	己卯士禍
李彦迪	晦齋, 文元公	1491~1553	광해군 2(1610)	慶州 玉山書院	配明宗廟庭 乙巳士禍
李 滉	退溪, 文純公	1501~1570	광해군 2(1610)	禮安 陶山書院	配宣祖廟庭
金鱗厚	河西, 文靖公	1510~1560	정조 20(1796)	長城 筆巖書院	
李 珥	栗谷, 文成公	1536~1584	숙종 8(1682) 숙종 20(1694)복위	白川 文會書院	配宣祖廟庭 숙종 15년 黜享
成 渾	牛溪, 文簡公	1535~1598	숙종 8(1682) 숙종 20(1694)복위	坡州 坡山書院	配宣祖廟庭 숙종 15년 黜享
金長生	沙溪, 文元公	1548~1631	숙종 43(1717)	連山 遯巖書院	栗谷門下
趙憲	重峯, 文烈公	1544~1592	고종 20(1883)	金浦 牛渚書院	李之菡과 교유 栗谷門下
金 集	愼獨齋, 文敬公	1574~1656	고종 20(1883)		配孝宗廟庭
宋浚吉	同春堂, 文正公	1606~1672	영조 32(1756)	尙州 興巖書院	沙溪門下
宋時烈	尤庵, 文正公	1607~1689	영조 32(1756)	驪州 江漢祠	沙溪門下 配孝宗廟庭
朴世采	玄石・南溪, 文純公	1631~1695	영조 40(1764)	長淵 鳳陽書院	金尚憲門下 配肅宗廟庭

# 5) 절의사상의 고취

사림은 왕실과 자신들 사이에서 대립되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의명분을 節義思想에서 찾았다.

군왕과 신료의 관계에서 설정된 정치적 내용을 도덕적 가치개념으로 승화 한 忠의 정신과 유자들 사이의 지식인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로서 義의 이념 은 사림의 정치적 위상을 지켜줄 도덕률의 내용이 되고 있었다. 사림들은 역사에서 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몽주를 찾아 그들의 학맥의 비조로 삼고왕조에 대한 사림의 상징적인 인물로 강조하고 있었다. 사림은 정몽주가 조선 건국에는 반대하였으나 왕조가 안정된 다음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로써 왕을 설득하였다. 그러한 변호논리는 곧 정치적 방어벽을 삼으려는 것으로, 조선왕조에 대한 충절을 실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자로서 정몽주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활동에서 자신들의 방어벽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정몽주의 충절과 연계하였던 것이다.

성리학은 정치활동에서 윤리적 내면성을 至公無私한 德으로, 충은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와 군주를 위해 전심 노력하는 것으로, 절의사상은 人欲을 제 거하고 天理를 보호하기 위한 예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었다.

사림의 절의사상은 이 시기에 강조되었던 《주자가례》의 준용과도 연계된다. 《주자가례》는 실천적인 면으로 사림의 세계에 침투되어 갔다. 조선왕실로서는 절대적 충성을 표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할 때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 사람은 국왕에게 표하는 충절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훌륭한 유자가 바로자신들이라는 인식을 학행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유학의 예사상과 합일되어복합적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평가된 《주자가례》는 외형적 형식과 내면에서의 충절사상이 강조되는 사람의 정치운동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가 될 수있었다.

앞에서 사림의 학문적 정통성과 정치력 표출의 면을 문묘종사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절의사상은 이들 문묘배향운동에서 배향인들의 학행을 상징하였던 주제였다. 이는 정몽주의 문묘종사를 건의하는 사림의상소문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중종 때 成均生員 權碩은 다음의 상소문에서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할 대표적 인물로 결정하는 조치와, 사림이 이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대의명분 안의 정신이 군왕에 대한 충절과 유자 자신들의 결속을 상징하는 의리사상이 예절에 맞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道學이 전해진 것은 堯舜으로부터 시작하여 孔子의 門下에서 융성하였으며, 孟子 이후로는 천여 년간 계승하는 자가 없어서 참으로 道統을 잇기 어려웠습 니다.…우리 나라를 생각하건대 檀君 이래로 말하면, 먼 옛날이라 징험할 수 없으며, 箕子가 나라를 세우고서야 겨우 八條를 시행하였을 뿐이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 고려말 儒宗 정몽주가 태어나 성리를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서 깊은 뜻을 혼자 알되 先儒와 잘 맞았으며, 忠孝와 大節이 당대를 聳動하였으며, 부모의 喪을 입고 祠堂을 세우는 것은 한결같이 家禮대로 하였으며, 文物・儀章이 모두 그가 다시 정한 것이었으며,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크게 일으켜 이 道를 밝혀서 후학에게 열어준 것은 우리 나라에 이 한사람뿐이니, 학문은 周子・程子에 비하면 참으로 차이가 있겠으나, 공로는 주자・정자에 비하면 거의 같습니다(《中宗實錄》권 29, 중종 12년 8월 경술).

己卯·乙巳土禍 이후에도 조정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림은 재야에서 꾸준히 유학을 연구, 성리학에 침잠하고 있었다. 유학이 심화된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왕조의 정치적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유학을 학문으로 소화·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림은 과거시험을 통해 왕실에 접근하여 관료로 진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학문으로 유학을 연구하고, 동시에 자활적인 생활방법을 개발하여 정계를 관망하며 비판도 하고 협력을 하는 다양한 생활모습을 소유하고 있 었다.

조정을 이루고 있었던 중앙정계에서는 이 시기에 이른바 당색의 조짐이 보이면서 여러 갈래의 학파로 일컬어지는 스승과 학생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있었다. 유자들은 조선 초기 이래 누적되어 온 역사적 모순을 자성하고 이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거부하려는 보수세력과 정치적 갈등을 빚었다. 이 때 사람들이 정치적 지표로 주장한 것은 충절과 개혁이었다. 이는 곧 왕과 협력하면서 역사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유교정치이념의 기초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도 논리와 재야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논리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 사대부 관료들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왕권을 강화하여 사회안정을 추구해야 한 다는 정치명분이 맞서면서 보수와 개혁의 논리, 또는 당색의 경색으로 사림 사회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자파의 학통과 논리의 발전, 보호를 위한 사림의 활약이 조선 중기 이후 문묘종사운동·서원배향운동으로 표출되고, 내면에서는 이른바 절의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림파는 보수적 사림파와 진보적 사림파로 구분되기도 한다. 왕실에 기탁하여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유지·보호하려는 사림을 전자라고 한다면, 민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적되는 상부구조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비판세력으로의 사림의 존재가 후자이다. 후자는 이른바 민중을 위하자는 명분으로 기득권층의 정치세력을 비판하려는 존재로서 조선 중기 이후의 사림 세계의 한 실상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들 중에는 이른바 實學이라는 학문상의 방법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하고 당색으로도 구분되어 재야유자층으로 규정되면서 사회비판적 지식인으로 활약하는 사림층이 존재하게 되었다. 후자 그룹에는 남인 ·북인계의 재야사림이 속한다. 정치적으로는 집권정치세력과 재야의 유자로구분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유학을 자신들의 학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된 주제는 절의사상을 기저로 하면서도 방법론으로는 왕실의 위상을 절대적 권력으로 강화시켜 현실세계의 모순을 극복·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왕실과 협력하면서도 관료의 위상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었다. 사림층은 貢納의 개선책, 문무의 균형적 국방 대비책, 胥吏들의 개선책 등 현실정치의 치유 노력을 제안하고 있었다.

절의사상에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실천적 내용이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모순의 개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사상적 내용을 가지고 民人과 국가재정을 위한 개혁을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한 평생을 학문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은 예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충절의 모습을 자신들의 생활에서 발현하고 있었다. 《주자가례》의 勵行이 갖는 의미가 성리학의 심화과정과 일치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정몽주를 자신들의학통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에서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이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학통과 문묘배향에서 주장되는 이들의 행적에서 공통되는 것은 모두 실천적인 유학사상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 226 Ⅱ. 사림세력의 등장

중기 이후 문묘배향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나타나 당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묘배향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자가 있었지만, 현실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려는 학문적 노력,《주자가례》의 실천에서 연유되는 절의사상의 기저는 사람이 공유하는 이념이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유자들, 사람으로 형성된 정치세력은 강한 실천력을 수반하는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른바 사람의 사회사상을 절의사상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李範稷〉